

인 권 감 수 성  
향 상 과 정

---

---

## 사회복지분야(장애)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

- ◇ 일 시 : 2006. 11. 20.(월) ~ 11. 23.(목)
- ◇ 장 소 : 남한강연수원
-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목 차

---

## ▣ 교육일정

## ▣ 강의내용

- 마음열기 ..... 1
- 인권 정의하기 ..... 7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수용 및 이행의 제문제 ..... 15
- 인권위 NAP 권고안 ..... 23
-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 47
- 장애인 주거시설과 이용자의 인권 ..... 51
-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현황과 쟁점 ..... 83
- 희망 만들기 ..... 91
- 갈등해결의 이해 및 기본 기술 ..... 95
-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사례 ..... 117

## ▣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법 ..... 139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초안 ..... 160

■ 교육일정

	1일차 (11/20)	2일차 (11/21)	3일차 (11/22)	4일차 (11/23)	
오전 09:00 ~ 12:00	1. 등록 (11:30 ~ 12:00)	5.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수요 및 이행의 제문제 (09:00~11:00)	9.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현황과 쟁점 및 의견교환 (09:00 ~ 12:00)	12. 장애인생활 시설에서의 인권보호사례 (09:00 ~ 10:30)	
		조형석 (인권위 국제인권팀)		윤덕찬 (교남 소망의집 기획실장)	
		6. 인권위 NAP 권고안 •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중심 (11:10 ~ 12:00)	박병수 (인권위 정책총괄팀)	백선익 (인권위 침해구제3팀)	13. 수료식 및 설문조사 • 수료증 전달 • 교육 소감 • 설문조사 (10:40~11:30)
오후 13:00 ~ 17:30	2. 오리엔테이션 • 환영인사 • 교육과정 소개 • 인권위 소개 (13:00 ~ 13:30)	7.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13:00 ~ 15:00)	10. 갈등해결의 이해 및 기본 기술 (13:00 ~ 15:00)	14. 식사 (11:30~12:10)	
		이경숙 (에듀플랜 모더레이터)	조영희 (평화공동체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3. 마음열기 (Ice Breaking) (13:40 ~ 15:30)	8. 현장의 소리 및 분임토론 • 강의 : 장애인 주거시설과 이용자의 인권 • 분임토론 : 내가 생각하는 시설의 역할 등 (15:10 ~ 17:30)	11. 희망 만들기 (분임별)	○ 귀가(12:10)	
4. 인권 정의하기 (분임활동) (15:40 ~ 17:30)					
	김성학 (에듀플랜모더레이터)	임성만 (장봉혜림원 원장)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		
저녁 19:00 ~ 21:00	인권위 제작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상영 (자율 참여)	자유시간			

◆ 점식식사 : 12:00~13:00 ◆ 저녁식사: 17:30~19:00

■ 교육장 안내

□ 남한강 연수원 안내도



- 본 관 : 강의실, 숙소
- 화합관 : 식당, 매점

□ 시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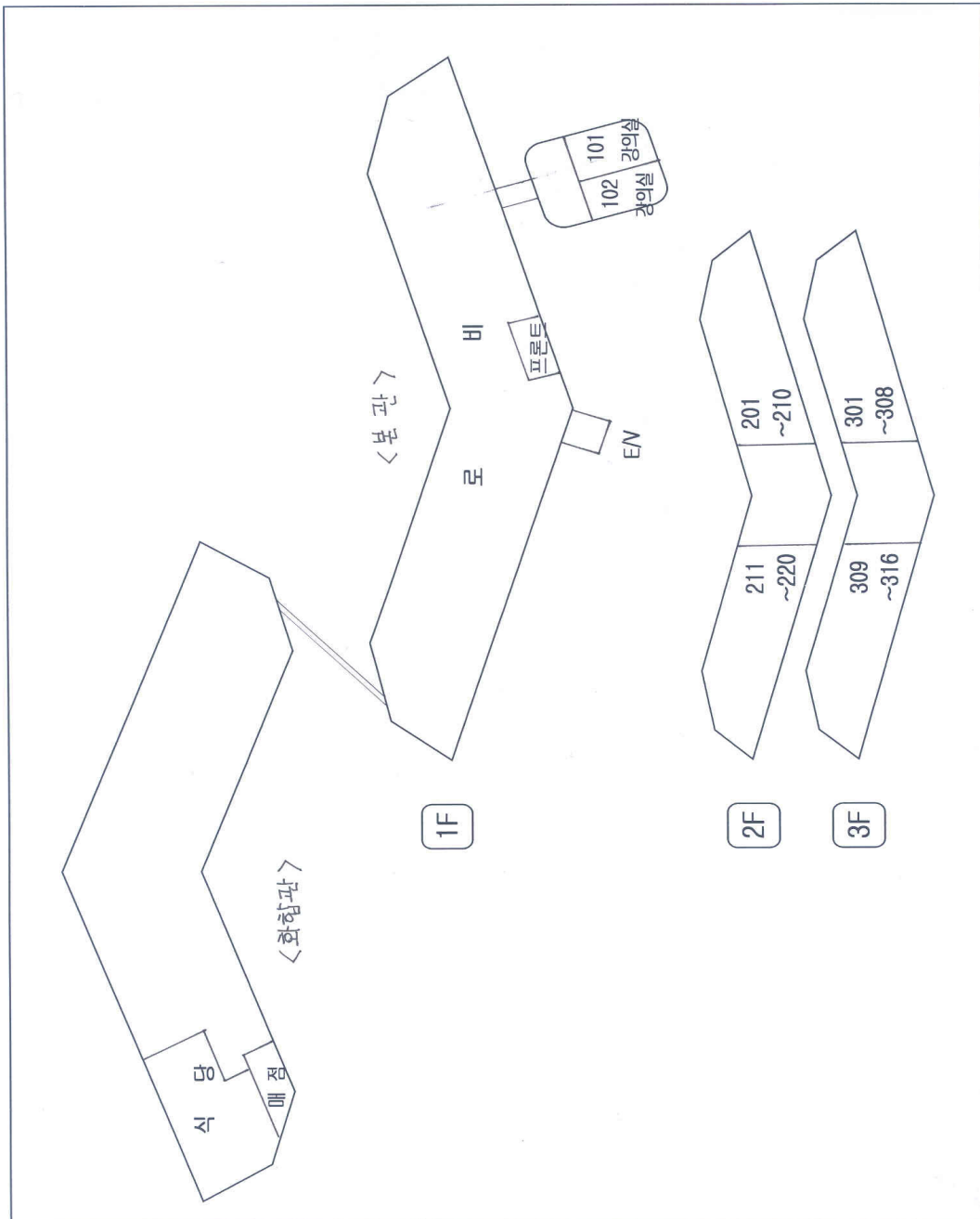
- 체육시설

시설명	위치	이용시간	기타
축구장 등	본관 우측	일몰전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장
탁구장	화합관 입구	"	출입문 양옆에 2기 설치, 라켓 대여 가능, 탁구공 필요

○ 후생시설

시설명	위치	이용시간	기타
식당	화합관 내	07:00 ~ 08:00 / 12:00 ~ 13:00 / 17:30 ~ 19:00	
매점	식당입구	07:00 ~ 22:00	

□ 본관 및 화합관 안내도



---

# 마음열기

---

# 마음열기 (Ice Breaking)

김 성 학 (에듀플랜 모더레이터)

## ■ 모서리 게임

모서리 게임은 참석자들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대답 중에서 자신의 견해와 가장 근접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는 게임이다.

### ❖ 진행순서

- ① 모든 참석자들을 강의실의 중심에 모이게 한다(강의실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 ② 게임 진행자가 질문을 제시한 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네 개의 답을 불러준다(예를 들어: “당신의 혈액형은?”).
- ③ 강의실의 네 귀퉁이에 서로 다른 답을 지정한다(예를 들어: “A형=첫째 귀퉁이, B형=둘째 귀퉁이, AB형=셋째 귀퉁이, O형=넷째 귀퉁이”).
- ④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귀퉁이로 가서 서로를 만나게 된다.
- ⑤ 각 귀퉁이에서 만난 참석자들은 짧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 진행을 위한 조언

- 모서리게임을 시작할 때에는 비교적 일반적인 질문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참석자들이 게임의 진행요령에 익숙해진 후에는 교육의 주제에 관련되어 결정 내려야 할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하면 된다.
- 이 게임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고 서로를 알게 함과 동시에 참석자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세미나 주제로 가는 첫걸음을 가능케 한다.

## ❖ 변이형

: 이 게임은 시작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질문이나 대답은 아주 많이 세미나 내용에 관계된 것들이어야 한다.

## ❖ 준비물

: 세미나 참석자들과 주제에 맞추어 ‘모서리 내용 판’에 제시할 질문들과 대답들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의실도 이에 걸맞게 미리 배치되어야 한다.

### □ ‘모서리내용’의 예:

- ① “열애중인 여자와 남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들의 애정표현을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 형태 중 한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모서리, 아무리 가까워져도 15~20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다. 둘째 모서리,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이다. 셋째 모서리, 가벼운 포옹과 입맞춤까지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모서리, (책임질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애정표현을 다 해도 괜찮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모서리를 지지하십니까? 그 쪽으로 가신 뒤에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과 이유를 논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뒤에 전체로 모여 각 모서리의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② 때로는 같은 혈액형끼리 모이게 한 적도 있고, 때로는 ‘청소년 담당간사, 사회사업부 간사’ 등 활동영역별로 모이게 한 적도 있다.
- ③ 그 외에도 네 모서리를 채울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자원봉사교육의 경우에는 자원봉사가 파급되지 않는 요인 네 가지, 정치적 성향을 묻고 싶으면 4개의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사진 네 장, 여행하고픈 곳을 묻고 싶으면 유명 여행지가 속한 나라의 국기 네 장, 교육의 문제점 중 최우선 해결과제를 알고 싶으면 교육현안 중 문제점 네 가지…… 대략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하다.



## ■ 이름표 게임

### ❖ 기본형 “이름표 게임”

(서로를 잘 모르는 10~20명의 성인교육이라고 가정한다.)

#### ❖ 준비물

: 참가자들의 이름표를 준비하되, 규격이 (12×10cm 정도) 크게 준비한다.

- 이름표의 한 면에는 이름을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크게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취미, 특기, 나이, 사는 곳, 출신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상 등 그 사람을 손쉽게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한다.
- 위와 같은 정보는 참가신청을 할 때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 ❖ 진행순서

- ① 참가자들은 진행자가 이름표를 뒤섞은 다음 무작위로 나누어 주는 이름표를 교육이 시작된 후에 한 장씩 받는다.
- ② 참가자들은 자신이 받은 이름표의 뒤에 적힌 정보를 암기할 시간을 가진다. 정보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35분이 적당하다.
- ③ 참가자들이 이름표의 내용을 다 암기한 후 진행자는 게임의 법칙을 설명한다.

### □ ‘이름표 게임의 예’

“이름표를 가슴에 부착하십시오.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누구의 이름인지도 모르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계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자, 지금부터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물론, 진짜 자신은 감춘 채 가슴에 달고 계신 그 분, 분명히 우리들 중에 계신 ‘이름표의 주인’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혹시 인사를 하고 다니시다가 자기 이름표를 만나더라도 절대 아는 척 하거나 눈치 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눈치를 보니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오늘 지각하신 참가자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

니까? ... 그렇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기의 가짜이름, 취미, 특기, 나이, 사는 곳, 출신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상 등 소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 게임 진행 시 자신의 앞사람에게만 집중 될 수 있도록 경쾌한 음악을 크게 틀어주며, 인사가 마무리 될 때쯤 음악을 꺼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멈추게 된다.

④ 다음으로는, 이름표의 주인을 밝히는 시간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자기 이름표를 직접 찾아가도록 한다).

- 만약 충분한 시간이 된다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맨 앞에 계신 분, 잠깐 일어나시죠.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답을 들은 뒤) 모두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이름표의 주인도 만나셨겠네요? 표정을 보니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참가자께서 먼저 이름표의 뒷면을 크게 읽어 주시죠. (읽는다) 좋습니다. 그럼 그분이라고 생각되는 참가자에게 직접 갖다 주십시오!”

- 이러한 형식으로 모든 사람이 이름표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도록 한다.(여러 장을 받는 사람과 한 장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서로의 면면을 익힘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역할게임”에 자연스럽게 적응해나가게 된다.

---

# 인권 정의하기

---

# 인권 정의하기

김 성 학 (에듀플랜 모더레이터)

## ■ ‘내가 생각하는 인권’ 정의 내리기

‘내가 생각하는 인권’ 정의 내리기 위해서 Photostand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 Photostand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 주제의 도입단계에 · 특정한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견해를 물을 때 · 프로그램을 마칠 때 참석자들의 느낌이나 소감을 말할 때
준비물은?
· 그림이나 사진 다수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참석자 1명당 길게는 3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게임의 특징은?
·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다.
진행순서
① 사진(혹은 그림)을 보여주고, 주제(혹은 게임의 목적)를 설명한다. ② 참석자들은 사진은 선택한다. ③ 잠깐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한 명씩 돌아가며 발표한다.

### ➤ 이름의 유래:

Photostand는 책상에 올려놓고 가끔씩 보는 가족사진처럼 그림이나 사진 혹은 그림엽서를 사용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 사용목적:

정말 다양한 경우와 상황에 사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 주제로의 도입단계에서
- 특정한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견해를 물을 때
- 프로그램을 마칠 때 참석자들의 느낌이나 소감을 말할 때

➤ 진행순서:

교육을 마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Photostand를 소개합니다.

다른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1. A형: 한 장의 그림을 사용하는 기법

- ① 우선 100여장의 그림을 준비하고 그 그림들을 교육 공간 중앙의 책상 위에 펼쳐 놓는다.
- ② 책상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원형을 만든다.  
(이전의 단계에서 흥분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음악을 통하여 마음을 다지기 위한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 필요)  
옆 사람과의 대화는 허락되지 않는다.
- ③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아주 천천히 책상주위를 돌면서 그림을 살피게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림을 살피면서 책상주위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모두 입을 다무시고, 옆 사람과의 대화는 일체 허락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그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상 위에 놓인 그림들 중에서 ‘나는 인권을 이렇게 정의 하겠다’ 혹은 ‘이 그림은 인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등등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 줄 그림을 마음속으로 선택하십시오.”

- ④ 참가자들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원의 안쪽을 향해 돌아서게 한다. 그리고는 진행자 자신이 미리 선택한 그림을 소개한다. (그림을 설명하는 기준과 방법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림의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참가자가 한 장의 그림을 선택하여 진행자가 보여준 방법으로 자신의 감상과 인식, 의지와 결의를 소개한다. 이 때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한 비평이나 평가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림은 잡지 등의 책에서 오려낸 그림이나 콜라주 기법과 마인드 맵핑에서 남은 그림들을 두꺼운 종이에 부착하여 사용하여도 무관하다. 그림엽서도 좋다.

## 2. B형: 세 장의 그림을 사용하는 기법

모든 참가자가 세 장의 그림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장은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예로, 나머지 한 장은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예로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선택이나 연상한 것들을 설명할 시간을 준다.

### ➤ 사용의 예:

시간이 날 때마다 신문이나 잡지에 그림을 모으세요. 전단지도 좋고 또 신문속의 큰 그림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모을 때 주의할 점은 가능하면 그림이 크고, 글씨가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림이 적격입니다.

## ■ 인권나무 만들기

이 단계에서는 각자가 정의한 인권을 잘 키우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 지를 정리해내고, 반대로 인권의 수호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나무로 표현해내는 단계이다. 긍정적 요인은 푸르고 신선한 나뭇잎으로, 부정적인 요인은 누런색의 잎으로 표현한다. 인권나무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BrainWriting의 순서를 따른다.

### Brainwriting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 어떤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생각을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정리해내고 싶을 때
준비물은?
· 전지와 소포지 + 필기도 or 모더레이션카드 + 필기도구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 아무리 작은 주제라도 40분~1시간이 소요된다.
이 게임의 특징은?
·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낼 수 있다.
진행순서
① 아래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예를 정리해 놓았다.

#### ➤ 이름의 유래:

머리(Brain)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글로 적는다(writing)는 의미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 ➤ 사용목적:

Brainwriting은 Brainstorming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작업이다. 차이점은,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말로 발표하는 Brainstorming과 리 Brainwriting은 글로 적어낸다는 점이다.

#### ➤ 진행순서:

여기서는 두 가지 형태의 Brainwriting을 소개한다.

## 1. A형 브레인라이팅

- ① 브레인라이팅은 2인1조, 4조1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② 두 명을 한 조로 하고 네 개의 조를 한 팀으로 묶어 조편성이 끝나면 진행자는 이미 주제가 맨 위에 적혀있는 종이를 모든 참여자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준다.
- ③ 종이를 받은 참여자는 혼자서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를 적는다.
- ④ 아이디어를 모두 다 적은 참여자는 파트너와 함께 각각의 아이디어를 비교해 본다. 이때 가장 먼저 발견된 공동의 아이디어를 OHP 필름에 적은 후 옆 조로 전달한다.
- ⑤ OHP 필름을 넘겨받은 다음 조에 속한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가 함께 내린 공동의 아이디어가 이미 OHP 필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없으면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적은 후 다음 조에게 넘겨준다.
- ⑥ 이런 식으로 팀에 속한 모든 조가 답이 완전히 적을 때까지 쓰기를 계속한다.
- ⑦ 각 조별로 다른 주제가 적힌 종이를 나누어 줌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모을 수도 있다.

## 2. B형 브레인라이팅

- ① 5-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한다.
- ② 각 조에는 전지나 소포지를, 그리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매직펜을 나누어 준다.
- ③ 참가자들은 조별로 자신들이 받은 소포지를 중앙에 놓고 둘러선다. 소포지의 중앙에는 이미 그 조가 다룰 주제가 기록되어있다.
- ④ 참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단어들을 기록한다. 기록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다.
- ⑤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다 써넣은 것처럼 보일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순간 종이를 중심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써넣었는지를 읽어보게 하라. 그리고 남의 아이디어를 통해 떠오르는 두 번째 아이디어를 기록하게 하라.

### ▶ 사용의 예:

이렇게 모아진 아이디어는 교육의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데 아주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브레인라이팅 다음 단계가 마인드맵이면 브레인라이팅한 전



지를 옆에 놓고 그 안에 쓰여진 아이디어를 한 가지씩 지워가며 마인드 맵을 완성할 경우 모든 생각들을 빠짐없이 마인드맵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Mind-map 이외에도 <요리요리>, <그림그림> 등의 단계를 연결할 수도 있다.

다음의 사진은 Brainwriting이 끝나고 난 후 Mind-map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수용 및 이행의 제문제

---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수용 및 이행의 제문제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 1.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Draft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성 보호 증진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으로서 2001년 제56차 UN총회 결의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2002년부터 조약의 형태, 성격, 구조, 비차별 및 평등원칙 등을 토의하여 왔으며, 2006년 8월 제8차 UN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는 의장안을 중심으로 협약 조항별로 각국 정부 대표와 국가인권기구 그리고 국제장애인연맹이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개진하고 이를 조정자(Facilitator)가 취합하여 완성된 조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완성되었으며, 12월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면 협약본문은 20개국, 동협약의 선택의정서는 10개국이 가입하게 되면 발효된다.

본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하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함께 동 협약 가입의 국내적 효력과 의미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 2.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내용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본문과 선택의정서로 나누어 채택되었으며, 선택의정서에는 동 협약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개인 청원 및 조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협약 본문은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총론 부분과 두 번째 실제적 조항 부분 세 번째, 국제적 이행메카니즘 네 번째 절차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총론부분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로 이 부분은 동 협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지침으로서 두 번째의 실제적 조항<sup>1)</sup>을 해석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되는 부분

---

1) 각국의 협의를 거쳐 완성된 본 협약은 평등·비차별의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1) 장애, 차별, 합리적인 편의제공 등에 관한 정의 2) 취약한 계층으로 다중적인 차별요소를 갖고 있는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조항의 존치 3) 장애인의 법 앞의 동등한 법적능력 부여 및 평등권의 보장 4) 장애인에 대한 비인도

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동협약의 실제적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 하나가 각각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9조에서 제30조까지의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정부보고서의 작성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구성 등 국제이행메카니즘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협약의 가입 및 발효 등에 관한 절차적 부분으로 제41조에서 마지막까지이다.

이중 네 번째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가 될 것 이다.

### 3.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 1) 조약의 자기집행성

##### (1) 직접적용가능성 여부의 문제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도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은 국회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대법원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국내에서 직접 적용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직접 적용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조약이라 하더라도 조약 또는 조약의 조항에 따라 직접 집행(직접 적용) 될 수 있는 경우와 별도의 추가입법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조약의 자기집행성 또는 직접적용가능성의 문제이다.

자기집행성의 판단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남아 있음. 대체적으로 자기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1) 조약이 그 시행과 효력에 있어 별도의 국내적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조약이 명백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별도의 국내적 집행행위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 3) 조약이 개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로 위 세 가지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 (2) 장애인권리협약과 자기집행성

장애인권리협약을 살펴보게 되면 장애인권리협약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조약은 아니다. 왜냐하면 항상 ‘당사국은 어떠한 의무가 있다.’

---

적인 처우의 금지 등 인권보호·신장 5)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이동권 보장 6) 교육, 의료, 고용 등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및 권리 보장 7) 국제 모니터링 관련, 개인청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 선택의정서의 채택 등임.

‘당사국은 무엇 무엇을 촉진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무엇을 보장해야한다.’ ‘당사국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등으로 개인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당사국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약이 직접 적용될 있는가? 즉, 개인이 동 협약상의 조항들을 근거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마 법원은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입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된다.

### (3) 헌법적 해석원리로써 장애인권리협약

자기 집행성과의 문제와는 별도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의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헌법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법과 체결된 조약이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국내법과 조약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권조약은 통상의 조약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조약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즉, 국제법상의 인권규약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내용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통상의 조약에 대해서는 대체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기본권이 헌법으로서 보호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에게 근본적인 중요한 자유와 권리가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려는 기본적 권리와 동일한 사항으로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적 차원의 성질을 가진 법규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게 된다면 1) 헌법과 마찬가지로 직접 위헌심사의 기준이자 재판규범으로 작용 2) 직접적인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은 아니지만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존중되어야 할 해석적 지침 3) 국제인권조약이 직접적인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은 아니지만 이에 위배되는 법률은 헌법 제6조 1항이 규정한 국제법 존중주의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위헌 이라는 견해로 정리될 수 있음.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인권조약의 하나인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 헌법의 해석원리의 하나로써 헌법을 해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자기집행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게 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에 있어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조약으로서 헌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됨으로 동 협약과 불일치하는 당해 법률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제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4.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제언

### 1) 국가의 의무에 대한 강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장애인권리협약이 헌법의 해석지침으로 작용하여, 국가에게 동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 협약의 조항하나하나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조항마다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과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여 국가에게 강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의무는 존중의 의무(obligation to respect), 보호의 의무(obligation to protect), 이행의 의무(obligation to fulfill)로 나눌 수 있다.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보호의 의무는 국가에게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를 강제하는 의무이다. 이행의 의무는 권리와 자유의 효과적인 실현에 목표를 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를 말한다.

이중 존중의 의무와 보호의 의무에 해당되는 규정들은 여타 재정적 지원이나 자원배분의 문제없이 곧바로 실현될 수 있는 의무이며, 이행의 의무의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지출이 동반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함. 이러한 경우 즉각적인 의무의 이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향유를 충족시킬 최소한의 핵심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존중·보호의 의무와 이행의 의무 중 최소핵심의무에 해당하는 규정은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들이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즉각적인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약 위반이 되는 것이며, 국내법이 규약과 일치 하지 않는다면 이는 협약 위반으로서 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의무와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각 조항마다 국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국가에게 이를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 2)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이용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자기집행성 및 헌법적 해석지침으로서의 성격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인권협약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주요 인권조약의 경우 조약위원회가 해당 당사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견해를 표시함으로써 인하여 국제적인 압력과 실질적인 국내법령의 개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리협약도 이와 같은 조약위원회가 있어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초의 보고서는 2년이내에 그리고 그 후로는 5년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여타 인권조약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조약위원회의 정부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는 계속하여 민간단체 및 국내인권기구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계속하여 언급됨으로써 국내적으로 동 협약의 이행에 대한 국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동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 장애인권리협약의 전망

장애인권리협약에 정부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동 협약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국내법적 정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하여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개정하거나 개정이 어려울 시 규약상의 조항들을 유보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러한 검토가 완료된 후 외교통상부에 가입요청을 하게 되면 다시 조약국의 검토를 거쳐 가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리 정부가 비준하였을 경우 국내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즉각적 조치와 점진적 실현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즉각적 조치와 점진적 실현의 내용 중 최소핵심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하며,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국내법제에 반영시켜야만 한다.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은 그 자체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 혹은 해석지침으로 작용하여 국내 법률들을 개정 혹은 폐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 빨리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에서 통과되고 우리 정부가 조속히 가입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의 향상과 촉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

# 인권위 NAP 권고안

---



# 인권 NAP와 아동인권

박 병 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 들어가는 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

올해 초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권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범국가적인 인권 청사진인 인권NAP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권NAP권고안은 정부에 인권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제부터 인권위가 작성한 인권NAP권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NAP의 기본성격 및 의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 인권NAP권고안에 제시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겠다.

## 인권NAP 수립배경

인권NAP 수립은 두 개의 대외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1993년 6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178개 국가는 세계 각 나라가 인권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른 하나는 2001년 5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로 약칭)의 권고이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인권NAP를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해 사회권규약 정부보고서를 제출하는 2006년 6월까지 보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외적 배경만으로 한국정부가 인권NAP 수립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미 한국정부는 2001년 11월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한국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해 왔다.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관련 정책·법령·제도·관행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기능, 차별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기능, 인권교육 기능 등을 담당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인권NAP는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와

맺은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인권위 설립과 적극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의 노력 속에서 우리 사회 각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권 종합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NAP가 수립되면 국가 인권정책 방향의 명확한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권 정책 관련 대내외 인식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인권NAP를 통해 인권 취약부분을 진단하고 취약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사회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이며, 정부의 다른 대규모 정책 사업도 인권 정책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일반 국민 사회에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의식과 생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 인권위의 인권NAP권고안 작성 배경

인권위는 이미 2002년 4월 경부터 인권NAP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호주를 필두로 하여 인권NAP 수립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은 인권과 관련해 국제교류가 잦았던 인권위에도 손쉽게 상륙했다. 인권위는 2002년 8월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작성된 「인권NAP 안내서(Handbook o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를 번역 출간하여 인권NAP 작성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인권NAP는 다른 나라의 수립 과정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권NAP 권고안 작성, 인권NAP 수립 및 이행이라는 2단계를 택했다는 점이다. 인권위가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고, 권고안이 정부에 전달되면 정부는 별도의 조정기구(현재 법무부 주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인권NAP를 수립하는 것으로 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권고기관 없이 바로 수립기관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국가인권위와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와 정부부처간의 성격과 권한에 따른 역할 조정을 통해 수립되는 우리나라의 인권NAP는 현실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인권가치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한국의 인권NAP 수립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기능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기능적 근거는 국가인권위가 국제인권 기준 및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핵심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구임과 동시에 향후 인권NAP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라는 점이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 등을 조사하여 의견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과 인권NAP 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19조 내지 제21조)을 들 수 있다.

## 인권위의 인권NAP 권고안 작성 과정

국가인권위는 가장 먼저 인권NAP 권고안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착수했다.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 정부 연구기관들의 각종 보고서, 인권단체들의 자료집 등이 우선적으로 수집되고 검토됐으며 주요자료 번역과 기초현황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특히 인권NAP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6건(자유권-8건, 사회권-10건, 사회적소수자-7건, 인권교육-1건)의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인권위는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사회의 인권현황과 인권개선을 위한 주요과제를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NAP 권고안 작성을 위해 ‘NAP추진기획단’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운영했다. 학계·전문가(9명), 인권단체 대표(7명) 등으로 구성된 NAP추진기획단은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인권NAP 권고안 작성과정에서 십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 정책토론회, 서면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인권단체의 전문성은 인권NAP 권고안의 가치를 더욱 높였으며, 특히 인권NAP 권고안에 담을 의제를 발굴하는 데는 인권·사회단체들이 좋은 조언을 해주었다.

권고안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마지막 절차는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였다. 정부부처의 고위직 간부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와 실무차원에서 진행된 인권NAP 권고 내용에 대한 정책협의를 인권NAP 권고안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잖은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집행기관인 정부는 민감한 국민정서나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문제 삼으며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로서는 ‘인권’이란 항목의 보편적이고 상호 불가분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향후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번 권고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한편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결집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역량을 총결집시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됐다. 2005년 8월부터 인권위원 5명으로

‘인권NAP 권고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권NAP 권고안의 모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 워크숍도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 인권NAP권고안의 구성

총 3부 19장으로 구성된 인권NAP 권고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등의 인권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까지 다양한 인권 과제들을 망라하고 있다.

인권NAP 권고안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국가인권위는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집중했다.

인권NAP 권고안에 어떤 부문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되는 부분이었다. 수많은 논의 끝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배치한 제2부 ‘사회적 약자·소수자’ 부분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탈북자) 등 모두 11개 부문을 선정했다.

국가인권위는 권고안에 담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과제의 시급성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집중해야 하는 분야 중에서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분야를 정하는 것이었다.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및 취약계층의 여성 등이 그 범주에 들어 왔다. 다음으로는 당사자 스스로는 의제설정이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 분야이다. 한센인, HIV/에이즈 감염인 등 병력자 인권, 그리고 성적소수자 및 시설생활인 인권 등이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채택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제3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분야, 현재의 인권보호를 넘어서 인권증진 차원의 분야, 인권교육 분야,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권NAP 권고안의 구성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한 다든지, 많은 정책적 과제를 평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인권NAP 구성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인권NAP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평가

1월 9일 인권NAP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며칠 동안 일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권고 내용 중 일부는 너무 진보적이다거나 몇몇 부분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인권위의 권고는 어느 정도 미래 지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인권NAP 권고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국내에서도 실현하려는 것이자 우리나라의 인권 현실을 국제기준에 근접하게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 상황논리로 인권NAP의 각 추진 과제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들을 숙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인권NAP 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상당 부분은 국가인권위의 성격과 기능,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오해와 무지, 인권NAP 권고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이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할 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인권NAP 권고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NAP 권고안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NAP 권고안이 향후 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인권NAP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2006년 현재의 시점에서 인권NAP 권고안의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또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행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권NAP 권고안이 한국사회를 불법시위와 불법파업이 만연하는 분열과 혼란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NAP 권고안은 이미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도달했거나 이제라도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NAP권고안 내용 중에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던 대표적 사례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일정 범위 확대’,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방법의 규제 조항 삭제 또는 개선’, ‘쟁의행위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부과를 완화하는 등으로 쟁의행위 보호’,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등이다.

## 인권NAP의 수립현황

현재 정부는 법무부를 주관부서로 인권NAP를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법무부는 인권NAP 수립과정에서인권위의 인권NAP권고안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NAP를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NAP권고안에 기초하여 향후 5년(2007~ 2011)에 걸쳐 인권관련 정책과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는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 정부의 인권NAP에 가능한 많이 반영되도록 수립과정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장애인 인권과 복지사회

일부에서는 장애인의 정책을 복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들중 어떤 이들은 복지적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은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실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정책에 대해 복지냐, 인권이나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인식해온 그릇된 상황은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복지와 인권이 상호보완해야 할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현이 곧 복지국가의 실현이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강화가 그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한국장애인인권헌장(제8조)은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전문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엔 정신지체인권리선언(1971년), 장애인권리선언(1975년)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예방, 장애인의 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생활의 통합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에 관한세계행동계획(1982년), 장애인의기회평등화에관한기본규칙(1993년)은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 보장, 국가정책 수립 시 장애인 관점 반영,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강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실천을 강조했다

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적 추세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하고(1998년), 4대 장애관련법(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정비를 통해 장애인 차별개선과 권리보호에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장애 관련 법·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여전히 미흡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육이동접근성 등 일상적 생활에서의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능력개발과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시설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정부는 그동안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설립기준 완화, 지원확대를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시설생활인의 인권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통합과 탈시설화 등을 통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인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차별시정과 관련해서 유엔은 1991년 총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변호인과 개인적 대리인이 모든 심리에 참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정신장애인의보호와정신건강치료의증진을위한원칙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2004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신장애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유럽연합형사절차상특정한절차적권리에대한기본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영국, 독일, 미국, 호주 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엄격히 요청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은 1984년 실질적 구속력을 지니는 시설운영기준 218개 항목을 마련하여 적용함

장애인교육권 강화와 관련해서 미국 장애아교육법은 장애유아에게 특수교육서비스 제공과 조기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규정하고, 재활법은 대학교육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 인권법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입학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고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에 특별지원교육과를 두어 특수교육, 특수학급 및 기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설비 확충과 특수교육 관련 교원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각 주정부별로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기회 보장과 관련해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고용의 차별금지과 우선적 채용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장애인이 어떤 직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지를 평가하고, 장애인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고용 재활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과 관련해서 미국은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장애인의 노선버스철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장애인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영국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수단 확보와 함께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건강권과 생활권 보장과 관련해서 미국은 노령·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했지만 사회보험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보장 소득이라는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 체제에 따라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역보건센터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은 장애인에게 국민연금으로 일반 장애인연금과 직업과 관계된 보조 장애인연금을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도 일반 유가족연금과 보조 유가족연금을 제공하고, 호주는 무료 의료제도와 보험제의 혼합 또는 절충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적정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연금·이동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로 의료비 지원·갱생의료·양육의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1970년대 시설생활인을 대형시설에서 분리수용 함에 따른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수용중심의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중심의 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률(National Health & Social Service Community Care Acts)을 제정하여(1990년)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일원화하고 이용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요양원개혁법(Nursinghome Reform Acts)을 제정(1987년)하여 시설생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장하고 있다.



## 인권NAP 권고안과 장애인 인권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법령 정비, 장애인 참정권 강화 방안 마련, 형사사법절차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 관련 시설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소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등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기회 확대,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확보, 장애인 관련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과 훈련 강화, 장애인 창업지원 강화 등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적 안정과 독립생활을 지원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시설 건물 내·외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장애인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장애수당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설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센터와 중단기보호센터 확충, 소규모 집단 가정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추진,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생활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개방과 사회화 추진,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나오는 말

이제까지 인권위가 작성한 인권NAP권고안의 의미, 정부의 인권NAP수립 의의 등을 중심으로 인권NAP에 대한 것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인권NAP권고안에 들어있는 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많은 정책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장애인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에서 볼 때 인권NAP권고안에 들어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NAP권고안이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상상 속에서 그려보는 이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방향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인권NAP의 장애인 인권 관련 부분

# II.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 1. 장애인

### 1-1. 서론

- 유엔 정신지체인권리선언(1971년), 장애인권리선언(1975년)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예방, 장애인의 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생활의 통합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에관한세계행동계획(1982년), 장애인의기회평등화에관한기본규칙(1993년)은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 보장, 국가정책 수립시 장애인 관점 반영,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강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실천을 강조함
- 그동안 정부는 국제적 추세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하고(1998년), 4대 장애관련법(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정비를 통해 장애인 차별개선과 권리보호에 노력해 왔음
-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장애 관련 법·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여전히 미흡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교육·이동·접근성 등 일상적 생활에서의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능력개발과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함

### 1-2.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

<b>목표</b>	<b>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보호함</b>
-----------	--

#### 현황 및 필요성

- 투표장의 편의시설 미비, 점자 투표용지 부재, 정신지체인의 선거권 무시, 피선거권자 연설의 수화통역 부재 등 장애인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장애인의 투표권이 침해됨

-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기 표현력이 약한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이 변호사, 대리인, 보조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 정신장애인의 시설물 출입과 면허취득 등이 과도하게 제한됨
- 장애인 관련 법률에 차별판단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어려움
- 장애인의 시설입소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설운영에서 시설생활장애인과 보호자의 참여가 배제됨

####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유엔은 총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변호인과 개인적 대리인이 모든 심리에 참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정신장애인의보호와정신건강치료의증진을위한원칙(1991년)을 의결함
-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신장애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유럽연합형사절차상특정절차적권리에대한기본결정(2004년)을 채택함
- 영국, 독일, 미국, 호주 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엄격히 요청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은 1984년 실질적 구속력을 지니는 시설운영기준 218개 항목을 마련하여 적용함

#### □ 국가 정책방향

- 법령 정비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국가책임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차별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차별행위를 엄격히 감독하여 시정해야 함

#### □ 핵심 추진과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 정비
-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홍보 강화, 선거용 보조기구(점자용 투표용지 등) 개발 및 보급 등 필요한 조치 마련
-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대리인·보조인에

게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 개선

- 장애인 관련 시설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소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개선

### 1-3. 장애인 교육권 보장

<b>목표</b>	<b>교육기회 차별을 시정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함</b>
-----------	---

####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조기교육이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력이 약한 장애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됨
- 장애학생의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장애학생이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함

####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학교생활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함(2002.9)
- 미국 장애아교육법은 장애유아에게 특수교육서비스 제공과 조기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규정하고, 재활법은 대학교육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규정함
- 뉴질랜드 인권법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입학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고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함
- 일본은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에 특별지원교육과를 두어 특수교육, 특수학급 및 기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설비 확충과 특수

교육 관련 교원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

- 호주는 각 주정부별로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 국가 정책방향

- 교육기회 확대,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확보, 장애인 관련 교육 행정의 전문성 강화 등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함

#### □ 핵심 추진과제

- 장애인관련법을 정비하여 장애인 교육차별을 금지하고 교육기관이 장애인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 마련
-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특수교육을 지원할 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학교의 보상교육 의무 수행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환경 마련
-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장학사에게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교육권 증진

### 1-4.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

<b>목표</b>	<b>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노동기회를 보장함</b>
-----------	-------------------------------

#### □ 현황 및 필요성

- 고용에서의 차별내용과 위반시 제재조치 등이 장애인 관련법에 명확하게 규

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 실효성이 낮음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장애인 노동자의 욕구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직업배치로 고용주나 피고용주의 만족도가 낮음
- 장애인 창업 지원 조건의 까다로움, 창업정보와 지식제공 부족, 우선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 및 자판기의 수적·지리적 제약성 등으로 장애인 창업지원의 실효성이 낮음

####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고용의 차별금지과 우선적 처우 보장을 규정함
- 미국과 일본은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을 유도함
- 미국은 장애인에게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기회를 창출하고 확대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
- 영국은 장애인이 어떤 직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지를 평가하고, 장애인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고용 재활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

#### □ 국가 정책방향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과 훈련 강화, 장애인 창업지원 강화 등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적 안정과 독립생활을 지원해야 함

□ 핵심 추진과제

-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고용차별과 위반 시 제재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차별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에서 국가가 선도적 역할 수행
-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형 다양화, 재활공학도구 개발 등으로 장애인 취업 활성화
- 장애인 창업 희망자에게 자금과 경영컨설팅서비스 지원, 우선허가제도 실질화 등으로 장애인 창업 지원 강화

### 1-5.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목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시설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

□ 현황 및 필요성

- 주거와 근린생활 공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간의 연계성이 미비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 주체가 불명확함
-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수단간 연계체계가 미비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생활이 어려움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미국은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의 노선버스·철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장애인법으로 보장함
- 호주는 모든 건물과 시설 내·외부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설치를

## 규정함

- 영국은 장애인의 대중교통 수단 확보와 함께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함

## □ 국가 정책방향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시설 건물 내·외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함

## □ 핵심 추진과제

-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간 연계성 확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에서의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조치 마련
-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하철역 승강기 및 기차의 장애인 전용 좌석 확대 등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중교통 체계 개선

## 1-6. 장애인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

### 목표

장애인을 위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함

##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재활시설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움
- 보험회사가 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 및 보험금보상에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함
- 장기간 치료하고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은 의료부문의 복지혜택이 절실하지만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급여수준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음

- 장애인 생활비 지원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하기에 크게 부족하고, 이러한 장애수당마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지급됨

####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미국은 노령·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했지만 사회보험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보장소득이라는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시행함
-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 체제에 따라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역보건센터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생계수당을 지급함
- 스웨덴은 장애인에게 국민연금으로 일반 장애인연금과 직업과 관계된 보조 장애인연금을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도 일반 유가족연금과 보조 유가족연금을 제공함
- 호주는 무료 의료제도와 보험제의 혼합 또는 절충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적정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연금·이동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을 지급함
- 일본은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로 의료비 지원·갱생의료·양육의료 등을 제공함

#### □ 국가 정책방향

- 법·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장애수당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함

#### □ 핵심 추진과제

-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재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 관련법을 정비하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대
- 장애인의 보험가입과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장애인시설 및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그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함
- 장애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책정 또는 장애수당 현실화
- 공공과 사설의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각종 놀이시설에 장애인 이용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권 및 생활권 증진

## 2. 시설생활인

### 2-1. 서론

-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설립기준 완화, 지원확대를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함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시설생활인의 인권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그러나 지역사회통합과 탈시설화 등을 통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은 여전히 미흡함
-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인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사유화,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됨

### 2-2. 시설생활인의 인권 보장

<b>목표</b>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관련법과 운영을 개선하여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함
-----------	--

## □ 현황 및 필요성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 기준 신고시설 1,213개소 86,116명, 미신고시설 1,209개소 21,896명으로 약 11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전체시설 중 82%가 장애인·노인시설임
-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의 미비로 입·퇴소과정에서 당사자의 선택권과 입소 후 신체·통신·종교 등 기본적 자유 보장이 미흡함
- 대부분 사회복지생활시설이 대규모 형태이고 사회화와 소규모화를 위한 전문인력과 설비가 부족하여 시설생활인의 정상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이 어려움
-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위주로 운영되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하여 시설생활인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음
-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자의 사유의식으로 인해 족벌·세습경영, 회계부정, 폐쇄적 운영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 □ 국내외 기준 및 해외사례

- 한국장애인인권헌장(제8조)은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전문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다수인보호시설을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인권보호가 국가 책임임을 규정하고 있음
-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1970년대 시설생활인을 대형시설에서 분리수용 함에 따른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수용중심의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중심의 탈시설정책으로 전환함
-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률(National Health & Social Service Community Care Acts)을 제정하여(1990년)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일원화하고 이용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함
- 미국은 요양원개혁법(Nursinghome Reform Acts)을 제정(1987년)하여 시설생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장함

## □ 국가 정책방향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소규모화, 사회화, 공공성 확보, 탈시설화 등으로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

#### □ 핵심 추진과제

-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
- 지역사회 자립생활센터와 중·단기보호센터 확충, 소규모 집단 가정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 추진
-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생활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개방과 사회화 추진
-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

#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이 경 숙 (에듀플랜 모더레이터)

‘내 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를 위해서

‘등 뒤의 인권’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

1. 전지 20장을 미리 벽에 붙인다.
2. 진행자 『이 시간은 우리 스스로 소수자가 되어서 어떤 차별을 당하는지 체험해보고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차별의 언어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3. 진행자가 참가자중 한명을 나오게 하여 등 뒤에 시트지를 붙여준다.
4. 등 뒤에 붙은 시트지를 보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것인지 2~3명씩 별집을 한다(이때 등 뒤에 시트지를 붙이고 있는 참가자에게 이어폰을 주며 음악을 듣게 한다).
5. 2~3분이 지난 후에 시트지를 붙이고 있는 참가자를 중간에 서게 하고 거리두기를 한다.
6. 참가자들이 거리두기의 자리배치가 끝나면 시트지를 붙이고 있는 참가자가 천천히 다른 참가자들 사이를 지나가고, 이때 옆에 있는 참가자들이 그 자리에서 말이나 행동을 한다.
7. 참가자들의 사이를 다 지나 앞쪽으로(진행자가 지정한곳) 나오면 진행자가 시트지를 붙인 참가자에게 질문을 한다.

<질문> A.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B. 자신의 등뒤에 붙어있는 소수자는 누구일까요?

8. 진행자 『그 자리에 서서 이 역할을 한사람에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적을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9. 등뒤에 붙어있는 시트지를 떼어 주고 붙였던 사람이 전지 한 장에 떼어낸 시트지를 붙이게 한다.

10. 두 번째 역할을 할 참가자를 뽑고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참가자가 두 번째 참가자의 등에 붙여주고 방법은 첫 번째와 동일하며 이렇게 20번까지 한다.
11. 20개 전지의 자기 것 앞에 서서 그 사람(소수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쓴다.  
(사과를 해도 되고, 위로를 해도 되고, 등등)
12. 한 칸씩 옆자리의 전지로 옮겨간다.

※ 11번, 12번을 하는 이유: 말을 하면서 소수자역할을 하는 사람과 소수자에 게 말을 하는 사람도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 대상과 화해, 용서하며 그 동안 했던 차별을 생각해 보게 한다.

---

# 장애인 주거시설과 이용자의 인권

---



# 장애인 주거시설과 이용자의 인권

임성만 원장 (장봉혜림재활원)

##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 1) 인권의 개념

#### (1) 인권의 특성과 가치

인권의 적용범위는 “모든 인간”이다. 따라서 인권은 보편성(universality)을 띠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두를 포괄(all-inclusion)하는 적용원리를 가지게 되는데,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보편적인 몇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첫째,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즉, 인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이다.

둘째, 인권은 보편적이다. 즉, 인권은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로써,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셋째,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즉,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권리는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로는 첫째 생명이다. 인권은 생명과 함께 출발하는 것으로 이에겐 육체적 생명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포함한다.

둘째, 자유이다. 자유는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각과 표현의 자유,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말아야 할 자유, 사생활과 거주이동의 자유 등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평등이다. 모든 사람은 성별, 나이, 출신지역, 종교, 빈부, 건강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이 행해져서는 아니 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넷째, 정의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의 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마련하는 등 사회정의와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이다. 인권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적 소수계층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 (2) 국제규정 및 국내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과 내용

- ①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 1948)
- ② 국제인권조약(1976)

### 국제적 인권 규정에 나타난 인권의 범주와 내용

인권범주	하위범주	내용별 실체적 권리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노예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차별금지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	사생활의 자유 (명예/명성/정보통신/통신/혼인선택 포함), 거주이전의 자유, 국적 취득권, 아동의 권리,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알권리, 정보 접근권 포함),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발언권, 참정권, 공무참여권, 청원권 포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 보장권, 노동에 대한 권리, 적정보수의 권리, 주거권, 건강권 포함)
	사회적 권리	가족형성권, 적정생활 수준 향유권 (식량권, 물에 대한 권리, 주거권, 건강권 포함)
	문화적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 참여(과학기술 향유권, 저작권, 자기문화 향유권 포함), 인권질서 추구권
법 절차적 권리	법 절차적 권리	법적 인격체의 인정, 법적 구제권, 인신보호, 공정/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 수형자의 권리

※ 자료 : 이창수 외(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 59

### ③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선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 :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고 정의(인권을 국내법에 의한 법적 권리로서의 성질뿐 아니라 자연권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폭넓게 수용)

## 2. 인권의 발달

인권의 3세대론(프랑스 법학자 Karl Vasak)

- 제1세대 인권 : 시민적·정치적 권리(세계인권선언 제1조~21조)
  - 제2세대 인권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2조~27조)
  - 제3세대 인권 : 연대권(solidarity rights)(세계인권선언 제28조~30조)
- ※ 제1세대 인권을 소극적 자유, 제2,3세대 인권을 적극적 자유로 분류

### 1) 1세대 인권 - 자유권 혹은 시민·정치적 권리

봉건시대의 종결 이후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한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인권의 첫 세대에 해당하는 UN의 세계인권선언은 공정한 대우, 선거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 권리들은 ‘소극적 권리’로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권리이다.

### 2) 2세대 인권 - 사회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세대 인권의 ‘자유’가 의미를 가지려면 ‘자유’를 통해서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등과 같은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인권의 개념의 전환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인권 2세대는 소위 ‘적극적 권리’로서 사회정의를 실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회·경제·문화생활에의 참여

를 보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권’ 이 새로이 등장했으며,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이전 시대의 역할과 달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배의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되었다. 사회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다음의 권리들로 발전해 왔다.

### 3) 3세대 인권 – 집단적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

앞의 1·2세대의 권리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면, 3세대 인권은 세계화와 시장지배에 대응하는 집합적인 보편적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집합적 권리’는 아직 형성단계에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3. 인권과 사회복지

### 1)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상태를 이루기 위해 개인에서부터 거시 사회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에 전문적·제도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며, 사회복지가 개입하는 다양한 문제 역시 빈곤, 차별, 가족, 질병, 노동, 교육, 자유, 학대와 폭력 등 인권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인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수요, 비심판적 태도, 비밀보장 등의 내용에는 이미 인권의 원칙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인권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 보장은 사회복지실천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인권의 원칙 및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기술들이 접목될 때 인권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사회복지실천으로서의 인권기반접근(right-based approach)

인권의 시각이 사회복지실천에 주는 장점으로는 (Skegg, 2000:671), 첫째, 인권에 대한 논의는 국내와 국제적 영역 모두에서 그 중요성을 갖고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인권적 접근은 자선(charity)보다는 자격(entitlement)을 강조하며 사회복지대상자의 권한을 증진시킨다(empowering).

셋째, 또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려운 윤

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합리화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시해 준다.

### (1) 인권기반접근법의 기본적 전제

인권기반접근법은 이념적 가치관 및 사회복지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인권기반접근법은 이데올로기적 함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권'으로 이에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대상자 모두 하나의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바탕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과 통제의 대상으로서 클라이언트 같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용어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개인에 의한 개별적 접근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입을 더 중요시 하며, 사회복지실천 전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이용자의 끊임없는 대화와 참여를 강조한다.

둘째, 인권기반접근법은 사회복지실천의 결과보다는 과정중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인권을 실천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실천과정 자체에서 인권원칙이 지켜지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이 원칙은 사회복지대상자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가 상호 작용하는 모든 사람 즉 동료, 경영자, 지역사회구성원, 학생, 기타 전문가들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정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인권기반 접근법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최대한의 자기결정과 스스로의 통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게 하거나, 면접과 서비스 계획, 프로그램 참여 등 모든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

### (2)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인권기반접근으로서의 이용자 참여 모델

여기에서는 인권기반접근의 하나로서, 이용자참여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인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인권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 ① 이용자의 개념

이용자라는 단어는 사회복지나 사회적보호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일하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일반적 호칭으로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 또는 이용자(user)'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에 들어서이다. 그 전까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용어는 '클라이언트'이었는데, 1990년대 이후로 '이용자' 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 용어는 점차 실천가, 관리자, 교육자들에게 폭넓게 보급되고 있다. 이는 이 용어가 서비스를 받는 사

람들의 권리와 영향력을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② 이용자 참여의 영역과 지원요소

이용자 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는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용자 참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개별적인 참여이며, 둘째는 서비스 이용자 집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이다.

이러한 이용자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교육과 직원 훈련이 중요하며, 동시에 조사연구에서 이용자 참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 이용자 참여의 영역과 지원요소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본전제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불평등한 관계 개선	
참여 영역	개별적 참여	서비스 실무자의 가정이나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이 아닌 손상 강조</li> <li>· 전문적 가정들</li> <li>· 문화적 둔감성</li> <li>· 사람들에게 대한 부정적(선택능력 부재) 가정</li> <li>· 이용자의 선택에 대한 전문가의 이견</li> <li>· 실무자와 이용자와의 제한된 의사소통</li> <li>· 실무자들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오해</li> </ul>
		서비스 조직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과 복지의 분리/공공, 민간자원의 분리</li> <li>· 서비스 이용자 구분 방식</li> <li>· 재정구조</li> <li>· 조직의 관행-오래된 서비스 제공방식</li> <li>· 제공 가능한 도움의 범위</li> <li>· 실무자에 대한 외부압력</li> </ul>
		선택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 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의 부족</li> <li>·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고 느낌</li> <li>·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느낌</li> <li>· 강제적 서비스-선택가능성 배제</li> <li>· 지역사회의 편견</li> <li>· 선택을 방해하는 빈곤</li> </ul>
	집단적 참여	참여방해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하는 서비스별로 집단을 구분하기</li> <li>· 서비스 이용자들보다는 보호자들과 의논하기</li> <li>· 능력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li> <li>· 문화와 언어</li> <li>· 주변화된 집단</li> <li>· 의제를 제기하는 자</li> <li>· 대표성과 책임성</li> </ul>

		참여 활성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성</li> <li>· 참여와 임파워먼트를 위한 자원들</li> <li>·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li> <li>· 케어워커들의 경험</li> </ul>
		포괄적 참여	· 서비스 및 평가, 기관 운영 등 포괄적 참여
		이용자 주도 서비스	· 이용자 통제 조직에 의한 이용자 도 서비스 전달
지원요소	교육	전문적 교육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 억압적, 반차별적 교육 강조</li> <li>· 기술습득만이 아닌 기본 교육 강화</li> </ul>
		직원개발	· 직원 임파워먼트
	조사연구		· 이용자와 함께 아젠다 형성/연구/정책 논의

※자료 : Service user involvement : synthesis of findings and experience in the field of community care. Lindow, V&Morris, J,1995. A report for the Joseph Rowntree Foundation. 필자가 재구성하여 작성.

#### 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와 인권

##### 1)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형과 기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로서의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 안전망의 주요부분으로서 특수한 욕구 또는 가정 상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정을 대신하여 생활의 장을 제공해 주며, 자활·재활서비스를 통하여 거주자의 사회복귀를 최대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변용찬, 2005).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으로는 첫째, 생활서비스 제공 기능 둘째, 기술(치료·훈련)서비스 제공 기능, 셋째, 원조서비스 제공기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생활서비스 제공기능은 거주자의 가정에 대한 대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환경과 유사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서비스 제공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장애인들의 기능회복이나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각종 치료 및 훈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서비스 제공기능 수행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제3의 서비스 기능으로서 장애인을 둘러싼 인간관계나 사회와의 관계성 조정, 권리의 확보, 지역사회자원 동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적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박태영, 2000)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해,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5개의 종류의 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거주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로는 <표1>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요양 시설, 영유아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주·단기보호시설, 그리고 장애인유료 시설, 또한 시설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중인 미신고 및 조건부 신고시설도 거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유료시설은 비용수납의 상한선 규제로 인해 실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침 상의 실비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장애인생활 시설의 유형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요양시설, 영유아시설은 생활 시설 체계 속에,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단기보호시설은 지역사회 이용시설체계 속의 시설로 구분될 뿐, 법적으로는 모든 시설이 주거서비스와 전문적 재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몇 명이 생활하느냐, 장애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이나 시설설비 기준만 다를 뿐, 거주시설 유형 간의 기능과 역할의 구분은 매우 모호한 실정이다(임성만, 2006).

<표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상의 거주시설의 종류와 법적 정의 그리고 기능

시설 구분	법적정의 (법48조)	시설의 종류 및 기능 (시행규칙 32조 관련)
1.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지비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 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2) 우리나라 거주시설의 현황

거주시설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말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은 265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19,668명의 시설 거주인들이 생활하고 있고, 한 시설의 평균 거주인 수는 약 7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331개소에 약 1,500명의 거주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개소 당 평균 생활자는 약 4.5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259개가 운영 중이고,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6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sup>2)</sup>.

<표 2> 신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종류별 수 및 수용인원(2001~2005)

단위: 개소, 명

구분	지체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 시설		계		생활자 수 평균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2005	31	2,332	13	632	12	735	110	8,015	93	7,657	6	297	265	19,668	74.22

자료: 보건복지부 (2006). "200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현황 통계

<http://www.mohw.go.kr/index.jsp>.

그리고 2004년 4월 현재 미신고 및 조건부 신고시설은 392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으며, 총 거주인 수는 7,371명이 생활 하고 있고, 한 시설의 평균 거주인 수는 약 19명이었다.

<표 3>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 현황(2003년 대 200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2004년 4월		
	조건부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총 계
시설 수	333	59	392
생활자 수	6,083	1,288	7,371
생활자 수 평균	18.27	21.83	18.80

자료: 보건복지부 (2004a). 『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 현황』. 과천: 보건복지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은 생활시설 265개소에 19,668명, 미신고 및 조건부신고시설 392개소에 7,371명,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31개소에 약 1,500명 정도로 추산한다면,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320개소, 우리나라의 주거시설의 수와 서비스 대상 인구는 약 1,308개소에 약 3만 여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수는 복지부 통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3) 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의 권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주거시설의 인권문제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장애인 주거시설의 이용자에 관한 인권과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약한 편이다. 도리어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게 원인이 되는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법률적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 (1) 이용자의 권리를 확장 시키는 법적 조항

- **이용자가 행정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사회복지사업법 33조 2항)**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사회복지사업법 33조 7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용자가 시설운영과 시설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27조)**
  -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운영위원으로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를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음(24조)
  -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의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시설의 평가기준 가운데,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규정.(27조)
-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 조항(장애인복지법 제4조)**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차별 금지 조항(장애인복지법 제8조)**
  -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에 대한 비하·모욕을 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포괄적인 배려 조항(장애인복지법 제7조)**
  - 장애인의 복지 정책결정과 실시에 있어 장애인의 부모 및 배우자 기타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의 이념적 지향점을 선언하고 있는 규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4)**

-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는 생활 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시설 및 장애인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 종교 활동 등의 부당한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입소 또는 통원을 거부하여서도 안 되고,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거주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자의 문화여가 선택권, 금전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개인비품 및 용품의 자율적 소유 및 관리의 인정, 재활계획 수립과정에 시설생활자 또는 가족의 참여를 유인하는 평가 척도(시설 평가 규정에 의한 2000년도 평가 척도)

## (2)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법적 조항

- 장애문제의 소재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장애인의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지역사회 보호』라는 서비스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48조)
  -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라고 정의
  - 인간이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이라는 자격 기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이며, 때문에 장애인은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의 일원이어야 하며, 시설 또한 지역사회 보호의 맥락 속에서 기능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체계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권리적 당위임. 그리고 한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더욱이 전인적 재활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과의 상호작용이 배제된 채, 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고 하는 시도들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장애인을 거주와 활동의 공간 구분 없이 시설 안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생활과 보호로부터 분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근대적인 빈민법 시대의 논리라 할 수 있음.

- 장애인을 의료적 대상으로 인식 시키고 있는 시설장의 자격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 시설장 :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시설 관리 운영규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 시설거주자 1인당 거실 면적 :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 거실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
  - 지나치게 최저수준의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개인적인 옷들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 숙소를 꾸미고 가구를 배치할 권리, 개인의 방을 잠글 수 있는 권리 등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이 제한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음.

#### 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유형과 이용자 권리 보호 규정

UN의 「세계인권선언」, 「장애인의 권리선언」,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및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인 장애인 인권 규정과 미국 요양시설 거주자의 인권장전 및 영국 버밍햄 주 시설생활인의 권리보장, 그리고 국내 우수시설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 유형과 실제적 실행되고 있는 보호규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유형의 구분은 2006년 체결된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을 기본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권보장 내용은 국내·외 시설의 인권규정 및 실태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 장애인 인권유형 및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내용 >

인권 유형	하위유형	장애인 및 시설관련 일반적 인권보장 내용	출처
평등권 (권리협약 5조, 17조)	차별금지 (세계인권선언 1조 장권리선언 2,3조 장인헌1조)	- 연령, 성, 장애정도, 장애유형, 종교, 출신지역, 가족 배경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장애인의 차별금지 - 개인적 차원의 보호에 있어 존엄성과 한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을 권리 -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온전한 향유	- 버밍햄 5조 - 미요양인권 4 - 권리협약7조1
생존권 (권리협약 10조,11조,15조, 16조,25조)	의식주 생활 (장애인인권헌장 2조)	- 개인적인 옷들을 구입, 소유 또는 선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권리 - 신발의 구입, 소유 또는 선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권리 - 영양학적인 적절한 식사의 보장(식단표) - 식사 및 간식의 선택과 결정 - 식사보조 및 쾌적한 식당환경	- 버밍햄 13조 - 남구현 외 - 버밍햄 15조 - 교남 32조 4 - 교남 32조 3 - 버밍햄 8조 - 남구현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소의 크기와 인원의 적절한 규모</li> <li>- 숙소의 적절한 냉난방과 개별 침구정리</li> <li>- 숙소를 꾸미고 가구를 배치할 권리, 필요한 가구 요구할 권리</li> </ul>	- 버밍햄 8조
	의료 및 건강 (장인헌 2조, 권리협약 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인 및 의료장비의 구비</li> <li>-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li> <li>- 화장실 등 공중위생 관리</li> <li>- 필요한 보장구 및 사용의 자유</li> <li>- 의료적 욕구의 표현과 자신의 의료적 상태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구현 외</li> <li>- 미요양인권16</li> <li>- 남구현 외</li> <li>- 교남 58조 2</li> <li>- 미요양인권5</li> </ul>
	안전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소 및 거주시설의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li> <li>- 화재에 대한 대비장치</li> </ul>	- 남구현 외
	신체 및 정신적 안전의 권리 (장인헌 9조, 권리협약 15,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강요, 신체적 체벌 및 구타로부터의 자유</li> <li>- 비하적 언어사용 및 정신적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li> <li>- 성적 희롱 및 성추행, 성폭행, 성 봉사로부터의 자유</li> <li>- 성생활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요양인권 1</li> <li>- 교남 42조</li> <li>- 인권위원회법 5</li> </ul>
자유권 (권리 협약 제14조 21조, 22조)	자기결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하는 호칭으로 불려질 권리</li> <li>- 이미용, 목욕 등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li> <li>-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밍햄 1</li> <li>- 교남 10조 5</li> <li>- 버밍햄 2</li> <li>- 버밍햄 14</li> </ul>
	종교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종교의 강요금지</li> <li>- 주일에 대한 존중과 종교의식 존중</li> <li>-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권리 보장</li> <li>- 종교생활의 자유 (획일적 종교의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남 22</li> <li>- 영인권법 9조</li> <li>- 영인권법 9조</li> <li>- 남구현 외</li> </ul>
	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 12조, 권리협약 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욕 보조 시 프라이버시 보호(성별 고려 등)</li> <li>- 개인물품 보관함 제공</li> <li>- 개인의 방을 잠글 수 있는 권리</li> <li>- 우편물, 전화 등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li> <li>-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시키거나 정보제공하지 않음</li> <li>- 개인의 신분증 본인이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남 10조 8</li> <li>- 교남 14</li> <li>- 버밍햄 9</li> <li>- 미요양인권13</li> <li>- 교남 10조</li> <li>- 남구현 외</li> </ul>
	외부와의 소통 (권리협약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에 초대하여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리</li> <li>- 지역사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보장</li> <li>- 외출의 자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밍햄 10</li> <li>- 버밍햄 11</li> </ul>
	입·퇴소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퇴소 시 자신의 의지 반영</li> <li>- 타시설로 의뢰될 경우 그 이유 및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구현 외</li> <li>- 미요양인권20</li> </ul>
	표현 및 정보의 자유 (권리협약 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및 통신기구의 사용보장</li> <li>-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공</li> <li>- 수화, 점자 등 모든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수단 제공</li> <li>- 장애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남 6절 및 66조1</li> <li>- 권리협약 22조(a,b,c,d)</li> <li>- 권리협약7조3</li> </ul>
사회권 (권리 협약 19,20,21,	가족권 (세계인권선언16조 장권리선언9조, 장인헌11조,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의 자유로운 면회 및 교류의 권리</li> <li>- 임신, 출산, 양육 시 보호제공의 권리</li> <li>- 결혼 및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권리</li> <li>-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로 부모로부터 분리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요양인권19</li> <li>- 장인헌 11조</li> <li>- 미요양인권19</li> <li>- 권리협약23조</li> </ul>

23,24, 27,28조)	권리협약 23조)	- 장애아동 은폐, 유기 방지 위해 종합적 정보, 서비스 제공	3항 및 4항
	사회보장권 (장애인인권헌장2조, 권리협약28조)	- 국가의 생계급여 등 수당의 지급액에 대한 정보와 관리 -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	- 남구현 외 - 교남 58조 - 교남 36조 2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26조, 장인헌 5조, 권리협약 24조)	- 연령 및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 교육기관을 이용할 권리 - 낮은 연령대 모든 아동 포함, 모든 교육제도 내에서 장애인 권리 존중	- 교남 52조 - 권리협약 8조 2(b)
	노동권 (세계인권선언 4조, 장인헌 6조, 권리협약 27조)	- 시설 내 노동의 권리 보장 및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 직업의 선택의 자유 -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	- 남구현 외 - 교남 48조 - 권리협약27조 (d)
사회권	경제권 (세계인권선언 17조, 장애인권리선언 11조)	- 개인재산 소유 및 관리의 자유 - 노동에 따른 적정보수 지급 및 관리의 자유	- 세계인권선언 17조 - 장애인권리선언 11조
정치권 (권리협약 29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21조2, 권리협약 29조 b)	-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 피선거권자(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교남62조 1
	투표권 (세계인권선언 26조 1,3 및 장인헌 3조, 권리협약 29조 a)	- 투표에의 참여보장, 투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비밀 투표의 원칙보장	- 교남62조 2
문화권 (권리협약 30조)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 (세계인권선언 27조, 장인헌7조)	- 자유로운 문화 여가생활의 보장 및 프로그램의 제공 - 시설 내 문화매체의 구비 및 자유로운 이용 -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 장소 및 참여 보장	- 장인헌7조 - 남구현 외 - 권리협약 30조5
법적차적 권리 (권리협약 13조)	법률상의 도움 (장애인 인권헌장 10조)	- 인격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 장애아동 관련 소송에서 아동의 최대이익 고려	- 장애인권리선언 11조 - 권리협약 7조 2
	시설운영 참여 (장애인인권헌장 13조)	-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보복을 우려하지 않고 이를 표현할 권리 - 시설생활 및 시설의 운영에 있어 생활장애인의 의견 반영	- 버밍엄 20 - 미요양인권19 - 남구현 외

## 5) 외국의 장애인 주거시설 인권관련 규정의 사례

여기에서는 외국의 장애인 주거시설의 인권관련 규정, 일본의 평화의 집 인권규정과 영국의 시설보호 윤리강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관련 규정이나 지침 개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평화의 집은 1991년에 문을 연 50명의 정신지체인 생활하고 있는 입소시설인데,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에 따라 입주자의 인권을 지키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관 내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한편, 영국의 [시설보호 윤리강령] 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시설보호를 받는 입소자들을 위해 필요한 인권보장의 내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1997년도에 3차 개정된 것이다.

이 두 사례를 종사자의 윤리, 직원의 태도 및 행동, 직원의 의무, 입주자의 자유존중, 사생활보호, 물리적 환경, 입소절차, 연령별 보장내용, 영역별 보장내용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종사자의 윤리

### 종사자의 윤리

영국	<p>103. 클라이언트 집단과 상관없이 시설은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거주자들의 개인적인 욕구에 반응하고 가능한 그들의 최대한의 성취에 대해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p> <p>148. 직원은 민간성과 개인의 욕구를 존중할 줄 아는 성격을 갖도록 한다.</p> <p>149. 직원의 기술을 시설의 목적 하에서 거주자의 욕구에 맞추어지도록 한다.</p> <p>150. 거주자가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위해 직원은 유능하고 감각이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p>
일본	<p>제1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폭력, 폭언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p> <p>제2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의 개성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선택, 결정한 것을 존중하며 항상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대응하여야만 한다.</p> <p>제3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의 장애 상태, 행동, 성격, 성별, 연령 그 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p> <p>제4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가 지역 사회 안에서 시민으로서 생활하기 위하여 항상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p> <p>제5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의 사생활 보호, 비밀 유지, 재정관린, 또한 사적인 공간과 시간의 확보를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p> <p>제6조 우리 직원은 항상 입주자의 소리를 잘 듣고 입주자의 고민이나 서비스 제공 요구에 대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p> <p>제7조 우리 직원은 입주자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잊지 않고 모든 입주자가 안심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입주자와 함께 만들어가야만 한다.</p> <p>제8조 우리 직원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상 노력해야만 한다.</p>

## (2) 직원의 태도 및 행동

### 직원의 태도 및 행동

영국	<p>154. 업무와 관련된 직무내용설명서는 모든 지위와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p> <p>155. 직원이 책임을 지는 작은 시설에서는 직원이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p> <p>156. 역할 또는 의무의 어떠한 변화든 서면을 통해 분명히 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p> <p>157. 거주자에게 예상되는 문제에 언제라도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직원들이 배치되도록 계획해야 한다.</p> <p>158. 직원의 배치는 요구사항의 기간을 높이 고려하도록 한다.</p> <p>159. 거주인들이 들어 옮길 때는 항상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임무를 맡아야 한다.</p> <p>160. 결혼한 커플들이 고용되었을 때에는 당번들이 할당된 시간이 공제되어야 한다.</p> <p>161. 밤 근무자들은 경험이 많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밤 근무자들이 충분히 경험이 없을 때에는 상급 직원이 불러 질수 있다는 전제로 한다.</p>
일본	<p>1) 입주자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p> <p>2) 명령적인 어투로 어떤 행동을 시키지 않는다.</p> <p>3) 변명을 하지 않는다. (상황 설명을 하고 본인의 이해를 구한다.)</p> <p>4) 직원이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사죄를 한다.</p> <p>5) 목욕 시 온수를 끼얹거나 할 때는 미리 말을 해둔다.</p> <p>6) 식사 중에 약을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p> <p>7) 직원실에서 입주자를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상황 설명을 하고 본인의 이해를 구한다.)</p> <p>8) 입주자와 이야기를 할 때 손을 허리에 대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말하지 않는다.</p> <p>9) 입주자의 옷이나 소지품 등이 낡아서 폐기처분이 필요할 때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설명을 한다.</p> <p>10) 입주자에게 주의를 줄 때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p> <p>11) 식사 개호가 필요한 입주자의 경우, 식사를 시작할 때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입안으로 넣지 않는다.</p> <p>12) 입주자를 방송으로 불러내는 것은 가능한 피한다.</p> <p>13) 직원의 사정으로 서두르게 하거나 빨리 걷게 하고 싶을 때 등을 떠밀지 않는다.</p> <p>14) 입주자에 대해 「좋지?」「알았지?」하고 무리하게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다.</p> <p>15)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입주자에게 투덜투덜 중의를 주면서 무리하게 잠을 자게 하지 않는다.</p> <p>16) 입주자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거나 거꾸로 움직이게 할 때 옷을 잡아끌거나 하지 않는다.</p> <p>17) 입주자를 격려할 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p> <p>18) 입주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진지하게 대응한다.</p>



	<p>19) 일상생활에서 입주자가 가능한 부분까지 도와주지 않도록 한다.</p> <p>20) 개호 등을 위해 할 수 없이 입주자의 행동을 구속할 때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한다.</p> <p>21) 「나중에」라는 말로 넘어가지 않는다.</p>
--	---

### (3) 직원과 기관의 의무

#### 직원과 기관의 의무

영국	<p>180. 기관은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p> <p>181. 기관의 책임자는 그 일의 책임성과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가져야 한다. 다른 부문의 의무를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p> <p>182. 기관은 법규와 지역상황에 맞는 문서화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p> <p>187. 경영자는 기관의 능력과 사업방법을 이해한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p> <p>188. 기관은 등록인정하기 전에 경영자가 등록을 취소한 것이 있는 지에 대해 DHSS리스트를 체크해 확실히 한다.</p> <p>190. 기관은 자원봉사 조직에 명백하게 정의된 책임의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분할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p> <p>191. 관리는 훈련에 근거한 전문적인 충고, 비용, 직원과의 약속을 고려해야 한다.</p> <p>192. 진행하고 준비한 새로운 시설을 열었을 때에는 기관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p> <p>194.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사회 서비스 담당 부서에 의해 교체되어질 때 거주자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p> <p>195. 특별한 클라이언트 집단과 부가적으로 법적인 요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보호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p> <p>196.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 가능한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경영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p> <p>206. 기관은 적어도 12달 중에 한번은 법에 의해 시설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그것은 더 빈번히 방문할 것을 충고한다.</p> <p>207. 점검은 삶의 질, 거주자의 보호, 그리고 관리의 표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p> <p>208. 체크리스트는 형식적인 연례시찰을 도울 수 있으나 토론 관리자와 사람들간 일상의 변화에 대해 체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p> <p>209. 관리자는 점검 시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p> <p>210. 해마다 리포트로 쓰여진 리뷰는 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p>
일본	<p>1) 직원은 시간을 지킨다.(지각도 포함)</p> <p>2) 어떤 일에 대해 교환 조건을 걸지 않는다.</p> <p>3) 직원회의 등에서 이야기된 것을 모두에게 전달한다.</p> <p>4) 입주자가 부르면 반드시 대답을 한다.</p> <p>5) 각 집이나 식당 등에서 직원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다.</p>

#### (4) 입주자의 자유존중

##### 입주자의 자유존중

<b>영국</b>	<p>35. 보행, 외부방문, 및 사회활동을 통해 거주자의 이동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p> <p>36. 모든 거주자는 공동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p> <p>37.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공되어지고 존중되도록 한다.</p> <p>38. 방문객은 가능한 시간에는 항상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p> <p>39. 방문객과의 만남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주자의 권리를 존중되어야 한다.</p> <p>40. 관리자가 거주자의 방문객이 오지 못하도록 결정한다면, 관리자는 그 사시로가 등록기관에서 이러한 행동이 정당한지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다.</p>
<b>일본</b>	<p>입주자의 여러 가지 권리를 직원이 지켜갈 수 있도록 모든 일과 속에서 직원은 자신이 입주자의 삶에서 서비스 제공자라는 존재인식을 깨닫는다.</p> <p>1. 입주자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하여</p> <p>1) 일과나 예정의 변경은 반드시 전달한다.</p> <p>2) 직원회의 등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결정하지 않는다.</p> <p>3) 식사 메뉴를 입주자와 상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p> <p>4) 여행 일정 등을 직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입주자와 함께 의논한다.</p> <p>5) 식사를 원하지 않을 때 강제로 음식을 입 안에 집어넣지 않는다.</p> <p>6) 하루 일과 중 입주자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 등 선택의 폭을 넓힌다.</p>

#### (5) 사생활 보호

##### 사생활 보호

<b>영국</b>	<p>29. 장기보호 거주자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의 방을 가질 수 있다.</p> <p>30. 거주자의 방에서의 사생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p> <p>31. 방을 함께 쓸 때에는, 각각의 거주자를 위한 개인적인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고, 룸메이트나 다른 가구들로부터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p> <p>32. 침실과 거실 온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한다.</p> <p>33. 거주자는 자신의 방이나 다른 편안한 장소에서 사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한다.</p>
<b>일본</b>	<p>1) 거실(혹은 집)에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함.</p> <p>2) 입주자가 없을 때는 문을 닫아둔다.</p> <p>3) 입주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는 문이나 커튼을 닫는 등의 배려를 한다.</p> <p>4) 입주자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p> <p>5)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마음대로 서랍을 열지 않는다.</p> <p>6) 거실에 견학자 등을 안내하지 않는다. 필요시에는 동의를 얻는다.</p>

## (6) 거주환경

### 주거환경

영국	<p>80. 시설 안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에서 자신이 선택한 취미나 흥미들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한다. 아동들이 사용하는 곳은 숙제를 할 수 있는 방이 되게끔 한다.</p> <p>81. 시설은 획일화되지 않은 방식을 제공하도록 한다.</p> <p>82. 거주자들의 짐을 놓을 수 있는 창고를 제공하도록 한다.</p> <p>83. 모든 거주자들의 방은 최소한 안락의자, 수납공간, 옷장 탁자가 갖추어져 있도록 한다. 또한 가구의 일부를 들여놓을 수 있게 한다.</p> <p>84. 성인과 청소년의 방에는 전원 버튼이 접근 가능한 곳에 놓이게 하고 밝은 전구를 달도록 한다. 어린 아동들에게 이것은 접근가능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p> <p>85. 거주자에게 침구류 선택권을 주어야 하고, 그러한 침구류는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p> <p>86. 거주자의 방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물질로 되어있도록 한다.</p> <p>87. 거주자는 방문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원한다면 방문에 편지함과 자물쇠를 달 수 있게 한다.</p> <p>88. 각 침실에는 개인용 세숫대야가 비치되어 있게 한다.</p> <p>89. 침실에 있는 세탁실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커튼을 쳐야 한다.</p> <p>90. 종합적으로 하나의 번기에 4명의 거주자의 비율이어야 한다.</p> <p>91. 8명의 거주자가 하나의 욕실을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제공되어야 한다.</p> <p>92. 거주자가 사용하는 번기와 욕실의 비율은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p> <p>93. 욕실과 화장실의 적합한 위치는 거주자의 핸디캡을 초래하는 것의 최소한으로 계획되어야 한다.</p> <p>94. 세탁기는 그들의 개인적인 옷들을 세탁하기를 원하는 거주자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p>
일본	<p>1) 휴일 아침에 아직 자고 있는 사람을 무리하게 깨우지 않는다.</p> <p>2) 목욕 시 한번에 많은 사람을 욕탕에 들여보내거나 서두르지 않는다.</p> <p>3) 안정된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한다.</p> <p>4) 방의 이동 등과 같은 희망 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인다.</p> <p>5) 입주자의 생활 장소나 작업장을 시설 안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p>

## (7) 입소절차

### 입소절차

영국	<p>1. 모든 주거시설은 설립목적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긴 팸플릿을 만들어야 한다.</p> <p>2. 거주자는 입소 전 시설에 방문할 수 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p>
----	---

	<p>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p> <p>3. 주거시설에 단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이 장기간 거주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한다.</p> <p>4.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 들어온 거주자는 입소한지 두 달이 지나면 임시입소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양방에 의해 동의되도록 한다.</p> <p>5. 임시 입소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의 욕구가 시설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거주자와 시설장, 중요한 후원자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p>
--	---

## (8) 입소자의 연령에 따른 인권 보장내용

### 입소자의 연령에 따른 인권 보장내용

영국 (아동)	<p>121. 아이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대한 사실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이해시켜야 한다.</p> <p>122. 장기간의 목표계획에 아동을 포함해야 한다. 계획은 아동에게 비현실적이어서는 안된다.</p> <p>124. 관리와 제재는 자존감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p> <p>125. 부모님과 접촉제한, 음식 빼기, 그리고 다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p> <p>128.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책임은 가족들과 공유해야 한다.</p> <p>130. 장애아동도 다른 아동과 같은 욕구, 그리고 가능한 모든 기회를 갖고 있다.</p>
영국 (노인)	<p>70. 거주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인식한다면, 장기적인 보호나 장례 또는 화장에 대한 그의 바람을 의뢰할 수 있다.</p> <p>71. 거주자의 임종시, 인척, 직원과 다른 거주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p> <p>72. 거주자의 죽음과 관련된 절차 시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관심을 인정한다.</p> <p>135. 거주자의 가구배치는 혼란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p> <p>136. 직원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한 노인들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고 훈련시켜야 한다.</p> <p>138. 신체적인 구속과 진정제에 대한 통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p>

## (9) 영역별 권리보장 내용

### 영역별 권리보장내용

영국 (재정)	<p>42. 영구적으로 입소할 가능성이 있는 성인은 시설 등록에 앞서 유언장을 작성하게끔 권한다.</p> <p>51. 거주자는 18세 이상의 친척, 친구 또는 누군가를 지명하여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p> <p>53. 자신의 재산관리를 위임하기 바라는 거주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한다.</p> <p>56. 관리인과 직원은 거주자의 금전관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p>
------------	--

<b>영국 (건강)</b>	<p>57. 모든 거주자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서비스와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p> <p>60. 치료에 동의하는 거주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통역자를 통해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64. 관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약물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이름을 붙여놓고 관리인이 권한을 부여한 책임감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관리한다.</p> <p>66. 규칙적인 약 복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알린다.</p> <p>67. 약물을 사회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p>
<b>영국 (식사)</b>	<p>96. 미리 만들어진 식사는 피해야 한다.</p> <p>97. 식사시간은 거주자들의 간식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p> <p>99. 의학적 충고,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의미 또는 강하게 선호하는 것이 있을 경우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다.</p>

## 5.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 권리 침해 사례와 대안모색

### 1) 우리나라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유형과 사례

인권 유형	하위유형	장애인 및 시설관련 일반적 인권보장 내용	인권 침해 사례
평등권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 성, 장애정도, 장애유형, 종교, 출신지역, 가족배경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장애인의 차별 금지</li> <li>- 개인적 차원의 보호에 있어 존엄성과 한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을 권리</li> <li>-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온전한 향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생님이 관심이 없어서 아예 나를 부르지 않는다.</li> <li>·내 나이 63세인데 시설장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 한다.</li> <li>·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친구처럼 '야, 자'한다.</li> <li>·모 정당의 대표가 00재활원에 방문하여 장애인의 목욕을 시켜주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몸이 공개되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다.</li> </ul>
생존권	의식주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인 옷, 신발 등을 구입, 소유, 보관할 수 있는 권리</li> <li>- 영양학적인 적절한 식사의 보장(식단표)</li> <li>- 식사 및 간식의 선택과 결정</li> <li>- 식사보조 및 쾌적한 식당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하던 장애인이 타 시설로 전원을 하게 되었는데, 개인의 짐은 작은 옷가방 하나 뿐이었다. 이유는 그 시설에서는 의복을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짐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소의 크기와 인원의 적절한 규모</li> <li>- 개별 침구정리</li> <li>- 숙소를 꾸미고 가구를 배치할 권리</li> </ul>	
<b>의료 및 건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인 및 의료장비의 구비</li> <li>-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li> <li>- 화장실 등 공중위생 관리</li> <li>- 필요한 보장구 및 사용의 자유</li> <li>- 의료적 욕구의 표현과 자신의 의료적 상태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li> </ul>	·휠체어가 있지만, 밖에 나갈 때 만 사용하고 실내에서는 그냥 기어 다닌다.
<b>안전의 권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소 및 거주시설의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li> <li>- 화재에 대한 대비장치</li> </ul>	· 건물구조가 지하 1층에서 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으며, 비상재해 등에 대한 대비 시설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b>신체 및 정신적 안전의 권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강요, 신체적 차별 및 구타로부터의 자유</li> <li>- 비하적 언어사용 및 정신적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li> <li>- 성적 희롱 및 성추행, 성폭행, 성 봉사로부터의 자유</li> <li>- 성생활 보장</li> </ul>	<p>·2002년 주간보호시설의 원장에 의해 아이가 구타당한 사건 :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일어서면서 옆에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고 일어섰다는 이유로 원장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전치 2주의 진단서와 사진을 제출하였던 사건이었는데, 원장은 때린 게 아니라 교육차원에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 번 두들겼다고 변명하여 분쟁이 일어났던 사건이다.</p> <p>· 층복에 있는 신고시설인 S안식원에서 원장이 폭력으로 생활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S방송사가 취재 고발한 사건 : S안식원은 남성 생활교사 1명이 시각, 정신지체, 발달장애, 할머니 등 9명과 생활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에는 정신지체인 엄마와 아들이 같이 생활하는 이용자가 있었는데 그 엄마를 원장이 구타하여 오른쪽 어깨에 상처가 나 취재진이 고발한 사례였다.</p> <p>·상담사례 : 뇌성마비장애인이 W거주시설에 20세에 입소하여 10년이 지났다. 퇴소를 하고 싶어 퇴소의사를 표시했더니 방에 가둬두고 때렸다.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가출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데리고 와서는 가둬두고 다시 폭행하였다. 퇴소를 희망한다.</p> <p>·시설장이 이용자를 성폭행하고 피복비, 급식비를 횡령한 사건. 이용자들은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장남이 총무, 며느리들이 보육사로 되어 있는 족벌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였는데, 이에 시설장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다.</p> <p>·상담사례 : 시설에는 공동 사용하는 거실마다 자위를 하는 이용자들이 한둘씩 있고, 여자 생활인이나 여자직</p>

			원에게 성적 접촉을 하려는 남자 이용자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상태이다. 최소한의 성적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일부 생활재활교사들이 외부에서 성교육을 받고 와 내부직원들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일은 있으나 생활인에 대한 성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생활인들 중에는 이성 간에 서로 좋아하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권	자기결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하는 호칭으로 불려질 권리</li> <li>- 이미용, 목욕 등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li> <li>-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권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미용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한 날 일괄적으로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해준다.</li> <li>·개별 생활인의 통장에 일정 금액이 결연후원금이나 작업 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으나 통장 소유자인 당사자의 개별적 욕구나 의사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다.</li> </ul>
	종교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종교의 강요금지</li> <li>- 주일에 대한 존중과 종교의식 존중</li> <li>-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권리 보장</li> <li>- 종교생활의 자유 (획일적 종교의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li> </ul>	·시설 이용자 000는 ○○○시설에 입소할 때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천주교를 종교로 가져야 했고, 전원 되어 ○○○집에서 생활할 때에는 그 시설이 기독교를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복지관 그룹 홈에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기관은 천주교를 이념으로 삼는 기관이라 다시 천주교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욕 보조 시 프라이버시 보호(성별 고려 등)</li> <li>- 개인물품 보관함 제공</li> <li>- 개인의 방을 잠글 수 있는 권리</li> <li>- 우편물, 전화 등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li> <li>-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시키거나 정보제공하지 않음</li> <li>- 개인의 신분증 본인이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경우) 남자 자원봉사자가 목욕시켜서 창피하다.</li> <li>·단체로 목욕해서 창피하다</li> <li>·목욕 자원봉사자가 자주 교체되어서 수치심을 느낀다.</li> <li>·여럿이 같이 하니 불편하다</li> <li>·좌변기 2개가 아무런 칸막이도 없이 나란히 설치된 화장실이 있는 방들이 있는데, 누군가 용변을 보고 있어도 그냥 들어가 옆에 앉아 용변을 볼 수 있다.</li> </ul>
	입·퇴소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퇴소 시 자신의 의지 반영</li> <li>- 타시설로 의뢰될 경우 그 이유 및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li> </ul>	·정선군 미신고시설 000집에서의 인권침해사례 : 정신지체인을 맡기려는 이용자 부모에게 5천만원을 내던지, 매 월 30만원씩의 입금을 요구했다. 그곳은 부모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약 40여명의 정신지체, 자폐 장애인을 위탁하고 있는 형태였으며, 비위생적인 환경과 3-4명의 관리인, 형편없는 식사 등이 알려져 sbs 뉴스추적팀이 취재하게 되었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아동학대 전문가,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이 조사를 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표현 및 정보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및 통신기구의 사용 보장</li> <li>-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공</li> </ul>	·상담사례 : 이용자의 누나가 34세인 정신지체2급 남동생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였다. 남동생은 22세 까지는 복지시설에서 지냈는데, 간질 발작증세가 심해져 퇴소를 하게 되었고, 지금껏 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화, 점자 등 모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수단 제공</li> <li>- 장애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li> </ul>	<p>발작증세는 거의 안하는데 집을 자주나간다고 했다. 얼마 전엔 혼자 집을 나가서 전에 있던 시설에서 찾아오기도 했고 그 이후로 못 나가게 하면 난폭해져서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한 적도 있다.</p> <p>무작정 집에만 데리고 있는 게 적절하지만은 않은 것 같고, 하루 종일 방안에 있으니 오죽 답답하리라 생각도 든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걱정도 많이 된다고 한다. 동생이 사회와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는데,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절차도 모르고,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한다.</p>
사회권	사회보장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생계급여 등 수당의 지급액에 대한 정보와 관리</li> <li>-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li> </ul>	·국가에서 나에게 수당을 주고 있는지를 몰랐다.
	노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 노동의 권리 보장 및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li> <li>- 직업의 선택의 자유</li> <li>-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li> </ul>	·1996년 정신지체인 시설 사례 : 시설장인 0씨는 특수학교 교장 겸직, 부인과 10여명에 이르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이용자에 대한 구타, 사택을 짓는데 이용자를 동원하여 노역, 직업보도 훈련의 명목으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착취, 그리고 처남 0씨에 의한 성폭행 시비가 제기되었던 사건이었다.
사회권	경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재산 소유 및 관리의 자유</li> <li>- 노동에 따른 적정보수 지급 및 관리의 자유</li> </ul>	·개인의 용돈, 후원금 등을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치권	투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표에의 참여보장, 투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비밀 투표의 원칙보장</li> </ul>	·2000. 10. 26 대전의 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있었던 사례 :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생활 시설에서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원장이 임의대로 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유권자의 동의 없이 기표를 하거나 기표하지 않은 채 선관위로 돌려보내 대리투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 2) 주거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확장을 위한 노력과 제언

### (1) 이용자 인권에 대한 규정화를 통한 인권 보장사례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에 관한 다양한 원칙과 실천과제들을 규정화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들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 소재 교남소망의 집, 익산의 동그라미재활원, 양산의 가운데찬빛, 광주의 소화천 사의집 등은 시설 내에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



설들은 인권에 대한 내부 장치에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과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인권에 대한 정의, 범주, 조사표,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권개념이 설명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제도, 침해 시 복구 및 징계에 관한 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으며, 시설 내에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구도 설치하고 있다.

인권규정의 내용은 기본적인 인권사항과 재산권, 참정권, 서비스 수급권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장애인, 직원, 외부인을 대상으로 인권, 행복지수 조사
- 인권침해 방지 위한 옹호자, 후견인 프로그램, 교육 강화, 인식 개선위한 홍보, 세미나 개최, 연구모임 운영 등
- 인권침해 사례 시 보호자에게 통보 의무화, 기관 내 보고조치, 사실조사, 징계조치 등이 시설들은 이와 같은 규정의 제정, 실시로 시설 내의 이용자 인권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가장 큰 변화는 직원과 직원 간의, 관리자와 직원, 이용자와 직원 간의 긴장감이 형성되어 의식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 **(2) 이용자의 현금 급여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있는 사례**

사실, 시설 이용자가 비장애인들과 같은 자유로운 삶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위치 지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설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식사, 간식, 의복의 지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의 참여 등 시설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서비스는 대부분 현물이나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달되는 「제공」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 이용자가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교류하거나 소비행위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물 급여를 가급적 제한하고, 현금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확보와 지역사회 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인천의 장봉혜림원의 경우, 이용자에게 피복비, 간식비, 개인용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경제활동에의 참여와 문화, 여가 생활의 경험을 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는 금전관리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개인의 소득에 의해 삶의 수준이 결정됨에 따라 연고자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높아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후원금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직접 소비하게 하는 방식의 도입은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도리어 민간 후원금도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이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하는 소비자적 입장으로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3)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이용자 개인의 참여와 선택을 확장하고 있는 사례

정상화의 개념은 장애인의 삶의 현장에서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며, 또한 삶의 현장에 관련된 다양한 행동체계 및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발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주거환경 또한 가능한 주류사회의 주거 환경과 같은 곳에서 생활해야한다는 것도 정상화의 개념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장애인의 주거환경은 장애인의 생활 기능성 확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시설에서 집단 급식소에서 식판으로 일률적인 식사를 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장애인은 같은 능력 수준에 있는 일반 환경에서 성장한 장애인보다 식사용기 사용 능력 면에서는 뒤떨어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 기능성은 장애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 기능하고 있느냐? 의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기능성 향상, 즉 장애인의 자조기술 및 사회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화 된 주거환경,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용구 등의 점점이 매우 중요한 지원적 요소가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최근에 시설들은 주거환경의 구성에 섬세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병원과 같은 중앙집중식 주거환경이 아닌, 개별적 가정화된 주거환경의 구성, 중앙공급식의 급식, 세탁, 의복,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개별적인 조리시설, 옷장, 개별 목욕실, 개별 세탁기 등을 별도로 설치하지 하는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4) 이용자의 권리확장을 위한 제언

**첫째, 시설 선택의 과정에서부터 이용자의 참여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과 같은 전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이용권 제도 등을 통한 시장 기제를 도입하고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을 강화해야해야 할 것이다.
- 이용자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생활시설을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거주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인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주거시설 이용자 참여 실태조사(2006. 백은령, 임성만) 연구의 조사결과, 공동생활가정과 같이 거주인 정원이 소규모이고, 주거형태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일

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일 때 이용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장애인거주시설이 지금과 같은 격리된 대규모의 생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형태로 분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장애인생활시설이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백업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애인들의 희망에 따라 대규모의 생활시설에서 4~5인 정도의 가정 분위기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생활가정으로 분화하여 장애인의 시설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임성만 2006), 또한 현재 대규모 거주시설들의 자산 처분 및 용도변경 수단이 강구되어 새로운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거주 서비스로의 전환을 유인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셋째, 거주 서비스가 지역사회서비스의 연속선상에 위치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편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거주시설들은 생활시설이든 공동생활, 주·단기보호시설이든 간에 법에 규정된 시설의 기능은 시설에서 주거생활을 하면서, 시설에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거주의 장과 활동의 장이 중첩되어 있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이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곳으로 정의 된다면, 또는 시설이 전인적 재활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전제나 믿음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인간이 그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이라는 자격 기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이며, 때문에 장애인은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의 일원이어야 하며, 거주시설 또한 지역사회생활의 맥락 속에서 기능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그리고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참여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거주서비스가 지역사회보호 체계로서의 주거지원서비스로 하루 빨리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넷째, 거주시설에서의 이용자 참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시설서비스의 최소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거시설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준들이 주로 재정과 입·퇴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시설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 책임, 제한에 대한 규정의 수립에 대한 참여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 표

준(Care Standard)의 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입소 시에 계약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정 과정과 이용자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본인이나 보호자가 참여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권리구제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거주시설의 이용자는 정신지체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 구제절차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신속하고 적절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공정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사의 대리기관으로 후견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용자 참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시설과 전문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 **당사자 통제방식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장애인 서비스에 관련된 문헌을 보면, 자기결정에 대한 논의가 주거나 또는 다른 재활서비스의 최종 성과로서 간주되면서 구체적인 서비스 평가의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택과 참여를 통한 자기결정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서비스 실천 관계」와 현재 우리가 논의 하고 있는 「이용자 당사자 통제 방식의 서비스 실천 관계」를 대비하여 고찰해 볼 때 그 의미는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이용자의 법적 권리나 인권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지향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장애인의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결정 개념을 프로그램의 수준에서 논의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 정신지체장애인과 같은 자기결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경험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용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통적인 조직체 중심(System-centered)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Personal-centered)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미국에서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인 PCP(Person Centered Planning :사람이 중심에 서는 계획)의 관점에서의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 **전문가들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중심의 개념을 실행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주거서비스의 현 위치의 문제점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 사회복지사 및 각 재활 전문가들은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치료와 지원 서비스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장애인의 선택과 참여, 자기결정을 확대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며(자기결정 훈련도 적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과 참여, 그리고 자기결정의 수준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가가 자기결정을 실행할 때 닥치게 되는 한계에 대한 것으로서, 실제로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화되고 당사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목표는 기관의 조직적 성격에 의해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의 조직 구조가 아직 위계적이고 권력 집중적인 여건에서는 도리어 서비스의 전달을 장애인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을 포함한 당사자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나, 자기결정을 반영하는 시설 평가 척도 등의 개발 등의 유인책을 통해 이용자 참여와 자기결정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국가인권위원회. 2005.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김미옥 외. 2006년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중간보고서” 미간행 자료
- 김경호. 2003. “영국의 아동복지 이용자조직의 참여에 관한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 김용득. 2002.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3): 363-387.
- 박경수. 2006. “장애인복지 소비자주의와 사회복지전문직의 주관적 개념화”, 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박태영. 2000. 사회복지시설론, 양서원,
- 변용찬. 2005. “한국의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및 발전방안”, 장봉혜림재활원 개원20주년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
- 이명현. 2004. “사회복지에서의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Advocacy)시스템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56(2): 29-52.
- 이창수 외. 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 59.
- 임성만. 2006. “우리나라 장애인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간 복지동향
- 임성만. 2006.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권위원회 인권세미나 발표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현황과 쟁점

---

#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현황과 쟁점

백 선 익(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3팀)

## 1. 한국 장애인복지의 변천 과정과 현황

‘장애인 무엇인가’라는 정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한 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변화해 왔다. UN의 장애인권리선언(1975)은 장애인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 면에서 선천적이나 후천적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개인적 혹은 사회적 생활을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곤란까지를 포함하여 의학·사회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장애’를 ‘신의 징벌’이나 ‘불운의 결과’라고 여기고, 따라서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최근까지도 일상의 여러 부문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경험이나 최근의 우리사회 변화의 흐름 등을 토대로 볼 때 보통 장애인복지는 i) 사회방위적 ‘분리와 수용의 단계’에서 ii) 사회보장적 ‘재활과 치료의 단계’, 또 iii) 사회복지적 ‘지역사회 통합과 인권을 강조하는 단계’로 진화한다. 이는 결국 장애를 개인들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볼 것인지를 인식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전문가(혹은 공급자) 중심의 접근에서 당사자 중심의 접근방식으로 복지정책의 관점이 수정된 결과<sup>3)</sup>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시설은 19세기 경 서구에서 농촌질서가 파괴되고 대도시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류사회를 위협하는 일탈자인 ‘장애인’들을 격리하고 노동을 강요하였던 작업장(Work House)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대규모 수용 시설의 존재 자체가 일탈자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할 필요성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 시설 수용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류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지게 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시설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유지의 속성’을 지니게 되어 시설화를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sup>4)</sup>되어 왔다.

3) 김용득은 ‘한국장애인복지변천과정과 대안’ 담론 모색’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i) 학계와 장애인 단체 등 운동세력, 그리고 일부 정책에서는 사회통합과 인권담론이, ii)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는 재활과 보호와 수용중심의 담론이 iii)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는 분리와 수용의 담론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한국전쟁 후 전쟁고아, 빈곤가정의 아동, 전쟁미망인 등에 대한 외국의 구호기관의 원조를 통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욕구가 표출됨에 따라 그 특성에 따른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이 증가되어 왔다. 전체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모두 1,608개소(11만 5천여명)이며, 이중 장애인 생활시설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sup>5)</sup>

2005.12. 현재

세부시설 종류		개소(수)	입 소 인 원		종사자(명)	비 고
			정원(명)	현원(명)		
합 계		426	24,654	22,202	9,772	
법인시설	소 계	265	21,721	19,668	9,038	
	지체/뇌병변 장애인시설	31	2,651	2,332	1,023	
	시각장애인시설	13	896	632	360	
	청각/언어 장애인시설	12	951	735	290	
	정신지체/발달장애인시설	110	8,618	8,015	3,390	
	중증장애인요양시설	93	8,256	7,657	3,795	
	장애영유아시설	6	349	297	180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	-	-	
개인운영신고시설		161	2,933	2,534	734	

## 2. 장애인시설의 인권 문제

통상 ‘인권’의 개념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자연권이라는 인식,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보는 인식,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인식 등으로 표현된다. 어떤 인식으로부터 출발 하였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천명한 세계인권선언(1948)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 침략이나 북한 주민의 문제 등 간단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없지는 않지만, 인권선언을 조약의 형태로 발전시킨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4) 남구현외,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실태조사, 2005.

5) 보건복지부, 2006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 협약, 1966. 채택, 1976. 발효, 1990. 우리나라 가입 및 발효)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 협약, 1966. 채택, 1976. 발효, 우리나라 가입 및 발효)’은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여개 이상의 나라들이 비준하였다. ‘인권’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도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특히, 조만간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구체적 책무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하게 ‘인권’의 개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생활시설에게 있어서 생활인은 고객이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므로, 사회복지시설들은 마땅히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근래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이론’ (정상화-normalization,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커뮤니티 케어, 시설의 개방화 등)에 따라 그 기능이나 역할이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상당수의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이 사회 복지법인(시설)을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오인하여 법인과 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부정비리는 물론 강제노역, 폭행, 감금, 성폭행, 강제불임시술 등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건들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다. 1996년 경기도 평택의 청각장애인시설인 ‘에바다’에서 발생한 강제노역, 생활자들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 원생의 알몸 변사체 발견,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일련의 사태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2003년 10월부터 현장 조사한 결과에서도 2개의 시설에서 불법감금, 강제노역, 종교행위 강요, 불법의료 행위, 외부와의 소통권침해, 국민기초생활수급액의 횡령 등 유사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장애인시설 및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시설을 즉별운영을 하면서 교직원 임용시 금품을 수수하고 설립이사장의 자식들이 직접 생활아동들을 성폭행하였으며, 수년간 이를 은폐해 온 사건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김포의 미신고장애인시설에서는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생활시설은 시설 자체가 대부분 폐쇄적이고 노후화하거나 실제로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점, 획일적으로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 생활자들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입장에서 시설직원과 상하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시설 직원도 시설생활자들을 단순한 서비스의 객체로만 여기고,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생활자들

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시설에서는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sup>6)</sup>, 외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 근로의 자유,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등과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정의되는 만큼, 시설생활인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3. 제언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 11. 설립이후 구금시설(교도소, 유치장 등)과 보호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부랑인, 정신보건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관계자를 고발조치하는 등 불가피하게 이들과 일정한 긴장관계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물론 현장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들도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거나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자 한다.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도 정성을 다해 장애인들을 보살펴 온 시설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전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사회복지시설)들이 현재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인 인권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비전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새로운 전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확인해야 할 원칙이 있다고 본다. 여러 현실적 한계로 인해 私的영역이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일 뿐, 사회복지사업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책무<sup>7)</sup>라고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운영비용을 사실상 전액

6)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특히, 직·간접적으로 특정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생활인들에게 종교의식 등을 강요, 유도한 적이 없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7) 미국의 **Wyatt 판결** ; 이 사건은 집단소송에 관한 것으로 1970년 10월23일 고소된 사건이다. 고소 내용은 알라바마의 브리스병원에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와 환경에 대해 환자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상대로 고소한 것이다. 법원은 1971년 3월12일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강제로 입원된 환자들도 의심의 여지없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기회를 부여 받는 등의 개인적 치료를 받을 법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브리스병원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부인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앞으로 6개월간 보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겠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브리스병원의 기능과 사명에 관한 보고서를 목표와 하위목표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Olmstead 판례 ; 장애인을 불필요하게 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장애에 의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한 1999년 판례. 여성정신질환자 2명은 정신분열증과 성격 장애 진단을 받고 조지아 주립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하였다가 치료를 위해 정신병동에 감금되었다. 이후 주치의에 의해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 치료가 적

공공재정(국비 또는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사회복지사업의 공익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설립 당시 법인의 초기 비용투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사유재산일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법인(시설)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일정부분 직·간접적 축재를 해왔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 공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복지재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투자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장애인시설(사회복지시설·법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를 포함하여 정치인, 관료, 사회복지종사자 모두에게, 무엇보다 법·제도나 정책·경영의 목표가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관점에서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장을 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설운영이나 이에 대한 감독이 공급자 위주로만 이루어져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설생활인들의 욕구는 주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선교과잉 문제도 생활인들의 특별한 처지를 고려하면 결코 간단치 않은 폭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인들이 만족하지 못한 법인이나 시설의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겠으며, 그에 대한 감독은 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끝으로 시설장 여러분께 법은 최소기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 위원회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인권침해행위와 법인 및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매우 긴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명확한 처벌근거를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판단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며, 이를테면 선량한 의도로 사업을 행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정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친인척 배제와 관련해서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자들 중 비교적 우량한 어떤 시설의 경우에 사업을 선대로부터 이어받아 형제들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비리나 인권침해 문제없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필요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러한 사례까지

---

절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지역사회 지원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계속 시설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에 2 여성은 주 정부를 상대로 담당의가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 치료가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을 해당 프로그램에 배치해주지 못함으로써 주 정부는 장애인법 2편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장애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 자원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거 없는 시설 내 격리 수용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당한 억측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또한 시설 감금으로 인해 가족관계와 사회적 접촉, 일, 교육적 발전, 문화생활 등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에 차별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음스데드 판결로 인해 주 정부들은 정신 혹은 신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가능한 한 가장 통합(융합)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실행전략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주 정부들은 이미 지역사회 기반의 환경에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취지의 제안은 아니다. 하지만, 시설생활인들을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양심적인 법인 및 시설들이 나서서 스스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그러지 않고 무책임한 ‘자율’과 ‘지원 확대’만을 주장할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동종업계의 자격 미달 운영자들만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아무쪼록 장애인 시설(사회복지시설)이 아름다운 가치를 지향하면서 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슬기를 모아가기 바란다.

---

# 희망만들기

---

## 희망만들기

박 영 희(장애여성공감 대표)

※ 첨부물 참고

---

# 갈등해결의 이해 및 기본 기술

---

# 갈등해결의 이해 및 기본 기술

조영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 갈등이란 무엇인가?1)

사전적 정의로 갈등은 싸움, 의견이해 따위의 불일치, 충돌로 정의한다. 영어의 Conflict는 라틴어의 콘플리게레(Confligere)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콘플리게레는 서로라는 의미의 Con과 맞선다, 치다는 의미의 fligere가 합쳐진 말로 다시 말해 서로 맞선다, 또는 서로 치고 때린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갈등은 등나무와 칩을 일컫는 말로 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 등나무는 생물학적으로 오른쪽으로 꼬여 올라가고, 칩은 왼쪽으로 꼬이는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니 등나무와 칩이 함께 있는 모습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꼬이면서 복잡하고 풀기 어렵게 얽혀 있는 현상이다. 우리말 사전에서 갈등은 그래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첫째는 ‘견해나 이해관계 등의 차이로 생기는 불화, 충돌’이고 둘째는 ‘한 개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 갈피를 못잡고 괴로워하는 상태’이다.

갈등은 개인의 내적 갈등에서부터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 갈등까지 여러 차원에서 일어난다.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의 기능, 원인을 기초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만큼 갈등은 다양한 차원으로 역동적으로 발생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갈등에 관한 정의를 보면, 도이치(Morton Deutch)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활동이 발생할 때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루탄스(Fred Ruthans) 역시 갈등은 “목표나 가치관이 양립할 수 없는 상태이며 타인의 목표나 성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고 감정적으로는 적개심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

1) 박수선(2002),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해”, 『갈등해결을 위한 학교 평화교육 프로그램 교사 워크숍 자료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참조.



대체적으로 갈등은 ‘양립 불가능한 이해관계나 목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sup>2)</sup>라고 정의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눈에 보이는 드러난 갈등(Manifest Conflict)을 우리는 갈등의 전부로 생각하기 쉽지만, 보통 드러난 갈등의 이면에는 원인이 되는 갈등의 뿌리가 존재한다(잠재적 갈등 Latent Conflict). 잠재적 갈등이 어떤 계기를 맞아 구체적으로 다투는 행위로 나타날 때 이것을 분쟁(Dispute)이라고 한다. 이 잠재적 갈등에 대해 이해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드러난 갈등이 해결된 듯 보이더라도 또 다른 계기를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분쟁으로 표출되고 갈등은 순환된다.

##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갈등’하면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보라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답답함’, ‘고민’, ‘싸움’이다. 그 외에도 ‘분노’, ‘경쟁’, ‘대립’, ‘폭력’, ‘투쟁’ 등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들이다. 간혹 선택, 도전, 해결, 대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또는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회피하고 싶은 심정이나 없으면 좋은 것의 표현으로 한 줄기를 이루고 또 한 측면으로는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갈등은 답답하고 복잡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므로 모른 채하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갈등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 어떻게든,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갈등의 상대자 또는 갈등상황 자체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 갈등을 무서워하고 이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유교적 전통은 인간관계에서의 ‘조화’를 중요시했으며 갈등은 이 조화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란 생각을 해왔다(이현우, 1997).

“똥을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라는 우리 속담에서 찾을 수 있듯이 갈등은 없으면 좋은 것이고, 생기더라도 피하거나, 또는 드러내지 않고 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인식해왔다.

그러나 고도로 분업화된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갈등은 어찌면 밥을 먹고

---

2) 갈등의 개념을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이해관계나 목표가 상충되고 있는 상태’(강영진(2000)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성공회대출판부, 10쪽)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다 해결의 관점에 선 것이라 볼 수 있다.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의 주요한 가치인 ‘공존’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는 것이므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양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는 해결 가능성을 강조하는 적극적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다.

우리는 흔히 갈등이 ‘조화를 깨는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갈등 자체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억제하고 부인하고 회피할 때 파괴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갈등 자체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사회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 정신적 파괴를 가져오는 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갈등의 원인

갈등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갈등에 대한 정의만큼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가치와 목표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거나 하면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관계상의 오해, 인식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상대적 박탈감 등 아마도 갈등의 수만큼 갈등의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 갈등의 원인을 유형화해보고 그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분석적 기준을 준다.

Christopher Moor는 갈등의 유형을 5가지로 범주화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이해관계 갈등, 사실관계 갈등, 가치관 갈등, 구조적 갈등, 인간관계 갈등이다.

**이해관계 갈등** : 한정된 자원이나 권력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인데, 주로 이해관계를 분배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비롯된다.

**사실관계 갈등** : 하나의 사건이나 자료, 언행 등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갈등이다.

**가치관 갈등** : 신앙, 신념 또는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치관은 고정관념, 편견화되면서 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인간관계 갈등** : 서로간의 불신이나 오해로 인해 상호관계가 벌어지는 갈등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오기도 하고, 분노, 증오, 서운한 감정 등 쌓인 서로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불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구조적 갈등** :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 즉 잘못된 제도, 관행,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차별, 억압적인 구조는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렇게 5가지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하나의 갈등현상은 일반적으로 여러 갈등유형이 중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나 인간관계 갈등은 거의 다른 갈등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흔히 사람들이 갈등을 대할 때 문제 자체를 대하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 갈등을 협동적으로 풀어나가기보다는 대립 경쟁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관계에 더 금이 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갈등현상이 갖고 있는 여러 유형을 개별적, 종합적 차원에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갈등해결 지점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사람들은 갈등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목표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Thomas-Kilmann).

Thomas-Kilmann은 이 두 관심사를 두 축으로 해서 목표의 높고 낮음, 관계가 협조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갈등대응스타일을 5가지로 나누었다.

### 경쟁대립형(Competing)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목표를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경쟁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 유형은 승패를 확실히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어도 개의치 않고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즉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상대방을 압도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 회피형(Avoiding)

갈등상태에서 얻게 되는 장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갈등상태에 대처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어도 없는 듯 무시하거나 회피한다. 즉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마저 무시하는 유형이다.

### 순응양보-동조형(Accommodating)

자신의 목표보다는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상대의 목표에 맞춰 문제를 푼다.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지만 훌륭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관심사는 버려두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나 입장을 주로 수용함

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 **타협절충형(Compromising)**

쌍방의 실익을 생각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즉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다.

### **협동형(Collaborating)**

이 유형은 개인간의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갈등의 해결은 정직한 상호토론과 협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쌍방 모두의 관심사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서로의 목표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이 갈등유형들 중에서 어느 것이 어느 상황에서나 바람직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갈등해결의 만족도는 회피형일 때 최소, 협동형일 때 최대가 된다.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나 일관된 유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갈등의 유형, 또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대응 유형과 상대의 대응유형, 그리고 목표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갈등해결의 전략을 세우는 데, 만족스런 결과를 얻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본적 관점과 원리**

평화적 갈등해결이란 나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개인간 갈등에서부터 집단, 국가간 갈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파괴적, 강압적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건설적, 자발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전환을 포함한 모든 노력이다(이재영, 2002 참조).

갈등해결은 드러난 갈등에 대한 대처만이 아니라 드러난 갈등 이면의 원인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그 잠재된 갈등의 뿌리를 변화 또는 제거시킬 때 진정한 평화

적 해결을 이룰 수 있다. 즉 폭력적 행동의 중지 또는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그 행동을 받침하는 신념, 가치관, 태도 등을 평화와 공존의 가치관, 신념, 태도로 변화시키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 해결은 갈등 당사자 모두에게 수용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계속 지탱, 지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Johan Galtung, 1996).

평화적 갈등해결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 관점은 다음과 같다(박수선, 2002).

### **1) 갈등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양한 개개인이 모여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데 각 개인은 너무나 다양해서—1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도 똑같지는 않다—조화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한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집단을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 그룹 또는 개인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불만이나 요구가 드러나지 않고 쟁점이 무시된다면 마치 조그만 뿔루지가 종기가 되어 끓아터지는 것처럼 갈등이 점점 자라 매우 부정적으로—심지어 폭력적으로—표출될 수 있다.

갈등이 변화, 도전의 기회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개인,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2)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 사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이, 성별, 인종, 또 다른 문화,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차이에 따라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차이가 우열을 가리는 차별로 되고, 또는 무시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존중은 누구나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나만이 아닌 타자 역시 존중한다면 다양한 관점과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갈등을 자연스럽게,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갈등의 한가운데 놓이더라도 건설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평화적 갈등해결의 여러 방법들은 존중을 기반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 3)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있다/자주성과 주체성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것은 태어날 때 지닌 특성 그대로 생로병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다. 사람은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기 발전을 계속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사람의 주체성과 자주성이다. 남과 내가 다른 것이므로 나다워야 하겠다는 의식이 주체의식이요, 남이 나를 대신할 수 없으니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의식이 자주의식이다(고영복, 2002).

평화적 갈등해결은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들 스스로의 지혜로 협동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 4) 갈등해결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다양성과 창의성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갈등분쟁 당사자 모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사람들은 갈등상황에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문제를 판단하고, 내가 가진 ‘답’이 최선의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의 답은 주로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는 답이다. 주어진 틀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사자 모두 ‘자신의 답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갈등을 당사자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다. 옳은 것, 최선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스스로에게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내가 지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어떤 갈등상황에서도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똑같은 갈등이라도 그 갈등의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 그 해결은 달라질 수 있다.

정해진 답의 틀을 깨고, 고정관념과 편견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갈등을 바라보고, 창의적인 대안을 내올 때 더욱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5) 협동/존중하는 민주적 의사소통과정

갈등해결이란 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대화로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대화는 상대가 가진 생각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상호작용이다. 대화는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잘 듣는 것은 ‘존중’을 표현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대화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입장,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갈등 당사자들은 애초에 가졌던 각자의 목표를 새로운 공동의 목표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대안을 내올 수 있다.

관계상의 오해, 불신으로 비롯되는 갈등의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해결되기도 한다.

평화적 갈등해결이란 참여(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그리고 존중(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의 의사소통을 통해 협동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 평화적 갈등해결의 과정

#### 1) 갈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로 동의한다.

최소한 어느 한쪽이라도 갈등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미 감정적으로 되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해 본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감정이 누그러들 때까지 문제를 다루는 것을 연기한다.

#### 2) 팀 구성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갈등 당사자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들 간의 동의를 통해 당사자들끼리 문제해결을 위한 팀을 구성할 수 있고(협상), 각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 3자가 개입된 팀(중재 등)을 구성할 수도 있다.

### 3) 문제의 성격을 규정한다.

양측 모두 자신들이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본다. 그 다음, 자신이 바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 양쪽의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들어보고 자신의 감정, 바라는 바, 요구하는 것 등을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한다(I message). 또한 상대가 말하는 것을 부연설명(Paraphrasing)해 본다. 이리하여 갈등을 불러일으킬 근본적 문제와 관심사에 도달하도록 애쓴다. 관심사를 분명히 하고 먼저 공동의 기반이 되는 동의의 영역을 명백히 한다. 또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둔다.

### 4) 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모으기(brainstorming)

갈등을 해결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열해 본다. 생각들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비판은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기꺼이 변화를 가져오고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새로이 구성해 본다.

예: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라면, 당신과 나는 어떨까요?”

“당신과 내가 확실히 ……를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

### 5) 해결방안들을 평가해 본다.

가능성 있는 해결방안들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제약이나 한계가 있는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평가해본다.

### 6) 하나의 해결방안을 선택한다.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선택한다. 양측이 선택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선택하기 위해 취해온 과정에 대해 만족하게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 7) 해결방안을 실행한다.

이 방안이 작용하도록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 방법이 작용하도록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실행계획을 적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이 계획의 실행에 대해 후에 평가해 볼 시간을 정해 본다.

## 갈등 해결의 여러 과정

갈등을 폭력이나 강제적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해결에 대한 자발적 의지와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인가, 3자의 개입을 통해서인가, 3자의 개입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보인다.

제도 문화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협상(Negotiation)**은 제3자의 개입없이 의견과 입장이 다른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협상의 목적은 쟁점과 문제를 규명하고 차이를 해결하는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갈등해결의 가장 소망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Mediation)**은 당사자들간의 협상이 실패하고 의사소통의 끈이 끊어질 때 중립적인 제3자가 의사소통을 도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보통 조정은 제3자가 자청하기도 하고 양측 당사자의 요구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회에 따라 법 제도 등에 의해 조정자의 개입이 강제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조정자의 개입이 당사자들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자는 당사자간 문제해결에 개입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정은 또한 객관적 진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 각각의 경험과 인식을 서로 받아들이고 이에 근거한 합의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중재(Arbitration)**는 조정과 같이 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돕는 과정인데, 조정이 문제해결의 제안이나 결정권이 당사자들에게 있다면 중재과정에서는

중재자가 갈등 당사자들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결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역시 갈등 당사자들의 합의된 인정과 요청에 의해 과정이 시작된다.

**진행(Facilitation)**은 다수의 갈등 분쟁 당사자 또는 관련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 회의, 토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갈등의 초기 단계, 당사자간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Dialogue)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그룹 내에서 멤버들간에 정치적 사회적 주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가 어렵거나 적대적인 방식으로만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황, 다른 그룹간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모였거나 어려운 이슈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떤 작업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폭력적인 국제, 종교분쟁 등 복잡하고 구조적인 갈등요인을 가진 경우 갈등 당사자들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제3그룹이 모여 간접적이고 객관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학술회의 성격의 Problem Solving Workshop 등에서도 진행의 과정과 진행자(Facilitator)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도 당사자들의 자발적, 긍정적 참여가 근간이 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우리 문화에 맞는 여러 과정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협상의 원칙(Roger Fisher, Ury William의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전략 참조, 1994)

1) 사람과 문제를 분리한다.

일반적으로 문제에 닥치면 사람은 갈등 상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관점, 잣대로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하며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 자체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못된 행동, 또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고 한다면, 일반화시키거나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존중하는 의사소통’이다. 상대의 입장, 관점을 잘 들어주고, 또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의 행동이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2) 입장(Position)에서 실익(Interest)으로

입장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걸으로 표명하는 해결책을 말한다.

실익은 입장 이면에 실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보통 문제, 갈등상황에 놓이면 입장끼리 대립되는 경향이 강하다. 입장끼리 대립될 때는 결코 양립될 수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을 통해, 또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존중의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걸으로 내세우는 입장 이면에 진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찾으면 서로의 이해 속에서 당사자간 목표를 조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 과정 역시 '존중하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그것을 통해 서로의 만족스런 결과를 내올 수 있다.

## 3) 창의적(상생적) 대안 만들기

흔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한다. 또한 나눌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서로 만족스런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 가지 대안보다는 다양한 해결책을 내오면 내올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판단을 분리시키면(Brainstorming) 더 많은 해결책을 내올 수 있다.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속에 서로에게 득이 되는 해결책을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 4) 객관적인 기준 적용

사람들은 결과의 '몫'보다도 '과정'의 공정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더 많은 분노, 갈등을 갖게 된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란 당사자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 그것에 근거한 존중하는 의사소통과정이고 그 결과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당사자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찾고 그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만드는 것이 평화적 문제해결과정이라 할 수 있다.

## 갈등해결의 기본 기술

갈등분쟁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해결과정이 진행되겠지만, 어떤 방법과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사자로서, 3자로서 갖추면 평화적 갈등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소개한다.

1. 정보 모으기/관련 데이터와 정보
2. 갈등분석 및 맵핑/과정, 당사자들의 이해, 욕구, 관계,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이해
3. 의사소통기술
  - 적극적 듣기
  - 패러프레이징
  - 관찰/몸의 움직임, 감정의 변화 등
  - 말하기/나의 감정, 실익과 욕구 중심의 말하기
  - 요약하기
  - 질문하기
4. 사람 중심의 기술
  - 감정, 분노 다루기
  - 편견 다루기
5. 문제해결 기술
  - Brainstorming
  - 깊이 파기
    - 난관, 막다른 골목 깨기/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 상대방 내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도록 돕기
  - 의사결정
  - 합의 만들기
6. 계획 세우기/큰 협상과 조정에서 꼭 필요하다.
  - 방향과 전략 세우기
  - 결과를 예측하기
  - 여러 가능성이나 대안 모색, 선택

## 7. 평가 기술

- 전체 과정 이해
- 난관에 봉착해 있는가, 아닌가 등

##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은 어떤 전달할 내용을 주고받는 것이다. 종종 우리는 의사소통이 정보를 주거나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의사소통은 나에게서 상대에게로의 정보와 마음의 전이이다. 좋은 의사소통은 적극적 듣기에 뿌리를 둔다. 의사소통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노력이고, 의사소통을 통해 어떤 상황을 깨거나 만든다. 많은 갈등은 좋지 않은 의사소통의 결과로 오해가 생겨 생겨난다.

### 의사소통을 통해 마음의 전이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태도, 경험, 의사소통스타일, 문화적 배경, 고정관념, 견해, 확신, 지식, 기분, 숨겨진 의도, 성, 나이/세대, 갈등의 접근방식

###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 1) 적극적으로 듣기

-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 말하는 사람의 본뜻이 듣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 갈등-분쟁과정에 쌓인 감정을 분출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이완되고 내적인 긴장을 해소하게 된다.
- 당사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켜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 \* 적극적인 듣기 요령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을 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주의를 집중하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라.

일단 개인적인 관점이나 의견을 접어라.

말뿐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말하는 태도, 행동 등)에도 주목하라.

- 말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상체도 약간 그쪽으로 기울인다.
- 이따금 눈을 서로 마주친다.
- 말하는 이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 및 이해의 표시로 고개를 자주 끄덕인다.
- 이야기 내용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공감을 표한다.
- 불분명한 대목에 대해 효과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말하는 이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해되도록 한다.
- 따지는 식의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과 감정 및 쟁점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는다.

### 상대방의 말을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

- ▲ 듣는 태도/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 시선을 마주친다.
  - 말하는 사람을 향해 앉는다.
  - 말하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인다.
  - 요점을 잡으며 듣는다.
  - 그렇군요, 네 등 수긍하는 말을 한다.
- ▲ 정확하게 질문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대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한다.
- ▲ 잘 듣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들은 내용과 느낌을 다시 되풀이하여 말한다.
- ▲ 말한 사람의 내용을 들은 대로 요점을 요약해본다.

## 2) 바꾸어 말하기 (Paraphrasing)

원문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말을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

바꾸어 말하기는 내가 상대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는 것,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 방식대로 다시 말해본다.
- 공감대를 형성하며 말한다. 선불리 판단이나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 말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말한다.
- 사실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포함하여 말한다.
- 중요한 문구 또는 문장은 말한 사람이 한 그대로 반복한다.

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라는 것인가요?

제가 당신의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볼게요. 당신의 말은....

### 3) 열린 질문

단정적, 일반화의 오류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가 하는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상대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도록 네, 아니오의 대답을 끌어내는 닫힌 질문이 아닌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질문의 유형

1. 따지기식 질문/왜? 도대체?  
“왜 늦은 거야?” “도대체 뭘 일을 이렇게 한 거야?”
  2. 이끌기형/하고 싶은 이야기를 숨기고 질문을 통해 의견을 표현.  
“오늘 날씨가 화창한데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산책하면 더 좋다고 생각되지 않니?”
  3. 복합형/문제에 초점을 두고, 잘못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함.  
“일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전번에도 이와 비슷한 거 아냐? 어째서 늘 이런 식인지 이야기좀 해볼래?”
  4. 닫힌 질문/예, 아니오의 한정된 답을 듣기 위한 질문
  5. 가정된 결론을 유도하는 질문
  6. 열린 질문
-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열린 질문보다 흔히 따지기식이나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는 목적을 지닌 질문을 많이 쓴다. 그래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질문도 자칫

따지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목소리의 톤을 부드럽게 하고 ‘왜’라는 직접적 질문보다는 “이유를 좀더 설명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자기 표현(마음으로부터 주고받는 대인관계 성취를 위한 말하기 방법)

##### ▶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기

관찰에 평가를 섞게 되면 듣는 사람은 이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하는 말에 저항감을 느끼기 쉽다. 또한 평가는 고정적인 일반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김사무관은 너무 자주 지각을 해. → 김사무관은 이번 주에 두 번 지각을 했어.

##### ▶ 느낌 표현하기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표현하는 것.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의 취약성의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느낌과 생각, 평가, 해석을 나타내는 말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필요와 욕구(needs) 이야기하기

느낌의 근본은 나의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필요)이다. 욕구와 느낌을 연결시킨다.

예) “나는 ...가 필요하기 때문에 ....느낀다.”

“나는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화가 난다.”

##### ▶ 상대의 느낌 듣기

나의 느낌과 필요(욕구)에 대해 상대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상대의 반응을 확인한다.

“제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세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한 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 ▶ 부탁하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언어로 부탁한다.

### <참고문헌>

- 갈등해결전문가훈련프로그램 참가자(2001), “갈등해결이론”, 『갈등해결 배우기: 이론 방법 적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AFSC
- 강영진(2000), 『갈등분쟁해결 매뉴얼』, 성공회대 출판부
- 고영복(2001), 『한국인의 성격 그 변혁을 위한 과제』, 사회문화연구소
- 박수선(2002), “갈등해결의 한국사회 적용을 위한 문화적 접근”, 민족문제에 대한 갈등 구조 파악과 남남대화 활성화 방안 연구 2차 워크숍 ‘갈등해소와 남남대화’, 민족 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해”, 『갈등해결을 위한 학교 평화 교육 프로그램 교사 워크숍 자료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이재영(2002), “갈등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해하기”, 『갈등해결워크숍 자료집: 갈등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교육』,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이현우(1997), “현대를 살아가기 위한 갈등 대응 전략”, 『정, 체면, 연출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 관계』, 한나래
- Carol Miller Lieber(1994), Making Choice about Conflict, Security and Peacemaking Part 1: Personal Perspectives, Educators for Social Responsibility
- Marshall B. Rogenberg(1999),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compassion』, PuddleDancer Press
- Robert Garrity, Faye Wampler, Susan Hess(1998), 『Respect, Responsibility, Resolution』, fsr Associates
- American Friend Service Committee (1999), Help Increase the Peace : Program Manual, (2nd Edition), Baltimore. Roger Fisher, William Ury, Bruce Patton(1994),
- Marshall B. Rogenberg(1999),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compassion』, PuddleDancer Press
- RTC(Responding to Conflict) ed. (2000), Working with Conflict : Skills and

Strategies for Action, London, Zed Books.

로저 피셔, 윌리엄 유리, 부루스 패튼,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성공적인 협상 테크닉』, 박영환 옮김, 서울: 도서출판 장락, 1994.

Johan Galtung(1996), “갈등이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 외 옮김, 들녘  
Stephen R. Corvey(1994),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 김영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과 관용형성을 위한 여교사 워크샵 자료집」, 2001. 12  
\_\_\_\_\_, 갈등해결워크샵 자료집 「학교갈등과 평화」, 2002. 8

\_\_\_\_\_, 민주시민교육 시범커리큘럼과 일반 시범연수자료 개발 『함께 만  
드는 평화, 공존의 갈등해결교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12

\_\_\_\_\_,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워크숍」, 2004. 12

한국여성사회교육원, 「갈등중재와 관용형성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2000. 8.

\_\_\_\_\_, 「갈등중재와 관용형성을 위한 워크샵 2차 자료집」, 2000. 10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갈등해결과 또래중재」

---

#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사례

---

#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사례

윤 덕 찬 (교남 소망의집 기획실장)

## I. 규정의 제정 배경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는 달리 정신지체인의 경우, 지적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입소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연고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지적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짐으로써 인권보장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집단생활 등의 시설 특성 자체에서 기인하는 제한들로 인해 그 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 **첫째,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생활 관련 내부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설생활장애인 역시 개인의 사생활보호 및 개인 소유물 보관관리,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 등 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에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자연스러운 생활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부 지침의 부재 및 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개인물품의 소유와 관련해서 시설환경 및 담당교사의 태도에 따라 개인별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일괄적인 보관으로 인해 개인의 특성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 **둘째, 시설장애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보호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사적재산의 소유·사용·처분 등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지체인의 지적능력 한계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고 더 나

아가 시설퇴소를 하여 자신의 재산(동산·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정신지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부분(주택 구입·전세, 근로계약 등)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며, 또한 무연고로 인해 시설입소를 하였지만 자립능력이 향상되어 취업 등으로 재산이 조성되었을 경우 갑자기 연고자가 나타나 해당 장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며, 이때 시설 내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온 시설장 및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돈이 쓰여지거나 저축되기 전에 장애인의 허락을 받는다거나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용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의 금전에 대한 시설내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으로써 담당직원의 마인드에 따라 장애인의 사적 재산이 관리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단체변호사과견지원사업’을 통하여 공익변호사와 함께 본원의 정신지체장애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보호방안 모색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보호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함으로써 시설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제 역할을 정립하고자 사업을 수행하였다.

## II. 규정 제정의 경과

- 2004. 2.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과견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 2004. 3. 31. - 1차 정기회의
  - 위원구성 : 염00, 윤00, 노00, 이00, 김0, 나0, 한00
  - 회의내용 : 향후 추진내용 및 계획 수립
- 2004. 4. 7. - 2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인권보장 영역 분류 및 검토
- 2004. 4. 13. - 3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개인물품, 자기관리)
- 2004. 4. 20. - 4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성생활, 직업생활)
  - 스터디 : 세계화 시대의 인권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김형식 역저)

2004. 4. 27. - 5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실태조사내용 검토 (주거배치, 개인물품관리, 식생활 등)  
 · 스터디 : 인권과 인간의 욕구
2004. 5. 11. - 6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금전관리, 개인위생)
2004. 5. 18. - 7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인권지표 및 규정화 작업의 일정 조정
2004. 5. 24.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3 인권상담분석보고회 참가  
 -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참가
2004. 5. 25. - 8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대인관계, 음주 및 흡연)
2004. 6. 1. - 9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위원별 실태조사내용 검토 (종교생활)
2004. 6. 9. - 10차 정기회의  
 · 스터디 : 민법상 재산권의 처분내용
2004. 6. 22. - 11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영역별 내용 취합 및 검토
2004. 6. 29. - 12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재산권 보장을 위한 규정 초안 검토
2004. 7. 6. - 13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세미나 개최방안 논의, 규정 내용 검토
2004. 7. 14. - 14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인권보장규정의 초안 검토 작업
2004. 7. 20. - 15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재산권보장규정에 대한 검토 작업
2004. 7. 27. - 16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향후 일정 및 규정 작업에 대한 검토 작업
2004. 8. 3. - 17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장애인인권보장규정의 최종안 작업
2004. 8. 17. - 18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재산권보장규정의 최종안 작업

2004. 8. 24. - 19차 정기회의

· 회의내용 : 세미나 진행원고 정리 및 준비작업

### Ⅲ.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의 내용 및 구성

#### 1. 기본이념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있지만, 이들은 장애인 인권의 근원적 기초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도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理想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에서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제3조) 및 이들에 대한 사회연대책임(제5조)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은 사회공동체와 단절된 고립된 집단이 아니며 또한 전체사회의 권력통제를 받는 객체적 격리집단이 아니라, 오로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이홍재, 1989;15).

우리 헌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전문),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제11조) 및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26조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의 기능과 방법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며, 공동체생활관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사유로써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객관적 법질서이며, 헌법해석과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된다(권영성, 1998;352).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법 앞의 평등원칙은 동등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는 ‘기회의 평등’에 근거하여 ‘장애라는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다.

장애인에 있어서 평등의 문제는, 소극적으로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장애인 인권의 직접적인 법이념적 근거가 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이다.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인간다운 생활권 조항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이므로 인간다운 생활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총칙적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이다(권영성, 1998;563).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권은 그 하층구조인 근로권, 근로3권,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보건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의 상호연대적 보장을 통하여서 구체적 내용을 획득하게 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이며,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다.<sup>1)</sup> 따라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입법권에

---

1) 헌법학에서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추상적 권리설을 취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그러나 추상적 권리설은 구체적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을 현실적인 권리로서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프로그램규정설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실질적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권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대하여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구체적 권리규범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김유성, 1997;92) 그러므로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은 다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나뉘어지는데, 그 실체적 권리는 소득보장수급권, 의료보장수급권, 복지서비스조치수급권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절차적 권리는 권리구제쟁송권, 행정 및 입법참여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으로 구성되는 규범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김유성, 1997;93, 이홍재, 1989;16).

국제인권규약(A규약) 제9조는 “본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고 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 2.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장애인 차별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 유형화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각 영역에 대한 차별적 상황들을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 소비자권리, 여성장애인권리 등을 관심영역(대분류)과 세부관심영역(중분류)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제적인 차별 상황과 연결하여 명시화(소분류)하여, 영역별·부문별 장애인 차별 실태를 구조화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의 영역별·부문별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장애인 차별 유형의 관심영역(대분류)과 세부관심영역(중분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아동지표와 청소년 인권지표, 그리고 UN인권위원회 보고서, 장애인인권침해 유형조사 등을 참고하였다.

UN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 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 규약)과 장애인의 인권과의 연관성을 분석

---

추상적 권리설은 근대의 소극적 시민국가에서 현대의 적극적 복지국가로 지향해 나가는 과도기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대변하는 애매한 논리의 산물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보장수급권도 불안전하나마 구체적 권리이므로 국가가 사회보장실현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침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권영성, 1998;567).

했으며, ‘같이 삽시다. 살아봅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1)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조사는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7개)과 사회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7개)으로 크게 분류하여 총 14개의 대항목으로 구성했다.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침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와 유사하고, 사회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침해에 근접한 내용으로 상당부분에서 UN인권위원회 보고서와 부합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본 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쉽게 인권침해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 1)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 ①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 ② 개인물품 관리 보장
- ③ 주거생활(주거환경 및 공간배치)의 보장
- ④ 종교생활의 보장
- ⑤ 성생활의 보장
- ⑥ 식생활의 보장
- ⑦ 프로그램의 참여 등
- ⑧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 2)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 ①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 ② 교육 및 학습 보장
- ③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 ④ 선거 및 참정 보장
- ⑤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 ⑥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 관련 규정(예시)

**제10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의복의 선택)

1. 장애인은 각자의 연령과 취향, 욕구에 따라 자신의 치수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지역사회 상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구입하도록 한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선택·구입을 하되, 담당직원의 임의 대로 구입할 수 없다.

### ② (의복의 착·탈)

1. 장애인의 의복의 착·탈 시에는 그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2.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의복을 빌려 입는 경우에는 최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착의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귀토록 한다.
3. 중증 장애인의 의복 착·탈의 경우에는 가급적 동성의 직원이 보조를 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의복 보관 및 정리정돈)

1. 장애인의 개인적 의복은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별 옷장에 보관되도록 한다.
2. 장애인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담당직원이 장애인의 의복 정리 지원 및 의복 폐기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획일적 의복 착용의 제한)

1. 시설 내·외적으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의복의 착용은 금지한다. 다만 캠프 및 체육대회 등 단합과 통일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 특성상 동일한 종류·색상의 의복이 후원되었다 하여도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하여서는 안되며, 시설장애인의 정원 중 1/10 이상이 동일 의류를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이·미용)

1. 장애인은 본인의 연령과 취향에 맞게 머리스타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이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의해 시설 내에서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머리스타일을 되지 않아야 한다.
3. 장애인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헤어 젤, 빗, 밴드 등의 머리손질도구를 구입하고 보관할 수 있다.

### ⑥ (화장)

1. 장애인은 각자의 성별·연령과 취향, 피부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화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선택한 화장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를 제한

하여서는 안된다.

⑦ (화장실 이용)

1. 장애인은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도 안된다.
2. 화장실은 사적공간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2인 이상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배치는 제한되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으로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⑧ (목욕)

1. 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인의 개인의 성향 및 취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목욕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의 목욕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의 일상 활동 등을 고려하여 목욕시간과 횟수를 개별화하고 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4. 중증장애인으로 스스로 목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제11조(기관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정부가 지원하는 피복비는 반드시 장애인의 피복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 및 물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개별 의류 보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화장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세식 변기로써 여자용은 10인당 변기 2개 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목욕탕 및 화장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와 시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2조(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의 직원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게 그에 따른 설명과 동의를 최대한 얻어야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 3. 인권침해 사전예방 체계

#### 1) 시설내 위원회 설치·운영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기관장이나 직원 한사람이 준비하고 실행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위원회로서 시설 내에 ‘교남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교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과 행복추구의 실태를 조사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인권보장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인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함에 있다.

- 구성 : 총 10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8인(외부인 3인 포함))

#### 2)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

##### 관련 예규

**제73조(인권상황조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권 상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결과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4조(교육강화)**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장애인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2. 본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친다.
3.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제75조(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행복추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펼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본원 홈페이지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글을 상주시키거나 홈페이지 내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을 따로 마련하여 인식개선의 장으로 삼는다.
2. 본원의 부지 입구, 각 기관의 출입구, 식당, 회의실 등 다중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를 물색하여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홍보물을 게시한다.
3. 책상용 또는 차량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배포·부착한다.

4. 후원자(단체)의 교육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교육을 위한 인권 자료 준비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76조(연구모임 운영)**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모임을 유도·지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조직 설립을 유도·지원한다.
  2. 다른 기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3. 연구결과의 성과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발표회를 개최한다.
  4. 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거나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식을 공유한다.

#### 4.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 1) 사후복구를 위한 사업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인권이 훼손되었다면 즉시 복구토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동 규정에서는 ① 사실의 인지, ② 사실조사, ③ 위원회의 결정·조치, ④ 소속 기관의 징계 조치 등 사안의 내용과 처리단계에 따라 명문화하고자 하였다.

물론 인권침해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나 위원회의 심의, 기관의 징계 등에 있어 과연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해당 사안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보장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기관과 전 직원이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벌백계로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

#### 관련 예규

**제77조(사실의 인지)** ① 본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장애인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 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사실조사)** ① 제73조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 및 제77조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사실조사는 「별지 1호」의 “장애인인권침해 사실 조사지”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5.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보고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위원회의 결정·조치)** ①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2. 공고는 사안에 따라 본원 내와 본원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3. 본원 내는 법인이사회, 전 직원, 전 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본원 외는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과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 지도·감독관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장애인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를 거부·유예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그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제80조(소속기관의 징계조치)** 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4. 소속기관에서는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IV. 적용사례 및 애로사항

### 1. 규정 제정이후 적용사례

#### 1) 장애인재산권 침해(박○○ 금전거래상에서의 재산권 침해)

**가. 교남소망의집 직원 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남소망의집 입소자 박○○에게 2만 원을 차용한 후 개인카드를 주어 변제하게 한 사안은 재산권 침해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4월 1일(금) 17:30 경 피조사가 김○○는 박○○에게 2만원을 차용하고 4월 2일(토) 10시~11시 사이에 박○○에게 개인카드를 주어 2만원을 변제한 바,

교남인권보장위원회에서는 시설직원으로서 개인적 사유로 클라이언트와 채무관계를 맺고 개인카드를 주어 갚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직원으로서의 도덕성 결여라고 결정하였고 채무거래시 교남장애인재산권보장규정 제21조에 위배되어 박○○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함

**나. 추가인출된 20만원에 대해 오○○이 박○○에게 보상을 하게 한 부분에 대한 재산권 침해여부**

4월 2일(토) 10시~11시 사이에 김○○가 박○○에게 개인카드를 주어 변제하게 한 후, 15시경 인터넷뱅킹으로 조회를 하였는데 20만원이 인출되고 2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한 내용을 김○○가 오○○에게 상담하여 그 부분에 대해 박○○와 민들레영토에서 상담을 하니 박○○가 가져갔다고 하여 현재 수입이 적으니 매월 5만원씩 갚기로 결정하고 오○○이 김○○에게 5만원을 변제함. 이에 인권위원회에서는 20만원과 2만원이 인출된 사안에 대해 인터넷뱅킹 통장자료를 물증자료를 확인하였으나 누가 인출을 하였는지는 증거자료가 없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박○○와 상담후 직원으로서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뚜렷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장애인에게 보상을 하게 한 부분에 대해 교남장애인재산권보장규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어 박○○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함

**다. 사건발생후 관련부서에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보고후 사안에 대한 부서내 개입 여부**

추가인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오○○은 4월 4일(월)에 4월 2일 추가 인출된 상황에 대해 부서내 회의에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은 11일(월) 9일 추가 인출된 상황에 대해 부서내 회의에서 보고받았다고 진술함, 오○○은 보고후 개입이 없었으나 박○○ 夫 방문후 개입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은 보고후 개입하였다고 함.

황○○는 인출된 일자에 김○○·박○○와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휴가(4일)일에 부서회



의에 오○○이 보고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은 바,

본 위원회에서는 오○○이 부서내 보고를 하였는데 부서장과 오○○이 파악하는 사건 발생일, 보고일, 개입내용에 대해 서로의 진술이 다르며 인출된 일자에 황○○가 김○○박○○와 상담을 하였는데도 부서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내 보고 및 전달체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 라. 박○○ 관련

박○○ 상담시 재산권 침해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조사요원이 질문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져갔다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잠잘 때 이불안에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 울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부서에서는 박○○에게 정서적 치료를 지원해야 함

### 2) 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관련기관의 반대 건

#### 가. 경위

본원 그룹홈에 생활중인 박○○와 인근 복지관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정○○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이성교제를 하고, 2005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복지관 측에 10차례 이상 계속적인 협조와 진행할 것을 요청함. 그러나 복지관 측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6년 9월 동의할 수 없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혼 중지 및 사과 요구'의 공문을 보내옴.

해당 기관의 반대이유는 아직 아내와 주부로서 기본적인 역할수행이 부족하고, 본원에서 상의없이 진행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해당부서에서 본 위원회에 본 건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를 함.

#### 나. 위원회 조치 및 대응

본 위원회에서는 자체회의를 통해 복지관 측의 일방적인 반대는 장애인의 행복추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논의하고, 위원회 차원의 공문 발송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실 통보와 함께 결혼에 협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문제제기할 것임을 통보함.

## 2. 규정 적용에 따른 예로사항

### 1) 직원간의 관계

동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다보니, 전체직원 중 일부는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인권침해 사실조사의 경우에 있어 같은 동료직원들간에 누구는 조사자로, 누구는 피조사자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어 상호간의 갈등 또는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권보장범주,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직원들이 ‘위원들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두고 보자’ 하는 식의 배타적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직원간의 관계가 사적 감정이 아닌 공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체직원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영입하여 활동케 하며, 회의내용 및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 2) 장애인과의 관계

시설보호의 전통적인 방식은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원과 생활인간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게 형성되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대리부모로써, 교사로써, 친구로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인권보장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다 보면 웬지 다소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력이 오래되어 시설생활인들과 젊음을 함께 하고 이제는 서로가 어느 정도의 나이에 들어선 직원들에게 목욕시킬 때는 이렇게 하고, 개인물품은 이렇게 관리하고, 용어는 이렇게 하라는 식의 지침이 큰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복지동향 및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직원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배로서 후배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함으로써 경력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V. 끝마치며...

“내 권리도 못 챙기는데 남의 권리는 무슨...”

“나는 규칙이란 걸 아주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이니까 인권 문제량은 별 상관이 없어”

혹시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장애인인권보장규정’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모여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우리들 마음 역시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잘해주는데 이런 것까지 만 들어야 하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된 책을 보며,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시설서비스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평소 전혀 인권에 관심없던 사람이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것이고, 또한 자기 권리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쪽에서 “당신에겐 이런 권리가 있소”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의 잣대로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아주 손쉽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권에 대한 지식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 또한 시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배우기 어려운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에서만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찾고 싶고 인권을 존중하고 싶다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학습은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어우러져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과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그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과 사업내용이 아직은 시설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부 록

---

1. 국가인권위원회법
2.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초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05.24 법률 제 6481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개정 2005.8.4>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보호소
  -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5.7.29>

6.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05.7.29>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7.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신설 2005.7.29>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5.7.29>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인권위원회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2005.7.29>.<2004.1.29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본 조 효력상실>

**제12조**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5.7.29>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7.29>

③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5.7.29>

④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7.29>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7.29>

**제14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제15조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 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12.29>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 3 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

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⑥위원회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제27조** (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립·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인권자료실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 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2005.7.29>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 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

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 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3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

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 (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 (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개정 2005.7.29>
2. 조사결과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5.7.29>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

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5.7.29>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5.7.29>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 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2005.7.29>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조정위원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7.29>

⑤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7.29>

**제42조 (조정)** ①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개정 2005.7.29>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개정2005.7.29>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조정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개정 2005.7.29>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개정 2005.7.29>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

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 장 보 직

**제51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 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 6 장 별 직

**제56조** (인권옹호업무방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개정 2005.7.29>

②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 2008.1.1] 제56조제2항

**제57조** (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일 2001.11.25]

**제58조** (자격사칭)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비밀누설)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0조** (긴급구제조치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 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초안

### 전 문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 (a) 전 세계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 가치, 그리고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유엔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며,
- (b)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해왔음을 인정하며,
- (c) 차별 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및 욕구의 보편성, 불가분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재천명하며,
- (c)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며, 장애인 개인의 손상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 (d)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 (e)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한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촉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화 관련 기본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과 정책지침에 기여할 중요성을 인정하며,

- (e) 장애이슈를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많은 부문에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f) 장애를 근거로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 (g) 장애인의 다양성을 더욱 인정하며,
- (h)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 (i) 위에 제시된 다양한 노력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곳에서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저해와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며,
- (j)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에서의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k) 지역사회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 및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촉진이 인류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에 있어 강화된 소속감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강조하며,
- (l)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m) 장애인은 당사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을 고려하며,
- (n)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국적, 인종적, 토착적 또는 사회적 배경, 재산, 출생, 연령 혹은 기타 신분에서 따라 복합적이거나 악화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염려하며,
- (o)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정내외에서의 폭력, 상해 또는 학대, 방임 또는 부주의한 처우, 폭사 또는 착취에 있어 보다 더 위협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며,
- (p)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해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아동권리조약에 대한 각 당사국들이 행하는 의무들을 상기하며,
- (q)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는 모든 노력에 있

- 어 성별의 관점을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 (r)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이 겪는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할 중요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 (s) 무력분쟁과 자연재해 발생의 상황들이 특히 장애인의 인권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쟁 중 및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국가에서 상당히 장애의 경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우려하며,
  - (s)bis 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 그리고 특히 무력전쟁과 외국군 주둔 상황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적용가능한 인권 협정서의 준수의 완전한 존중을 기반으로 평화와 안전의 상황들을 명심하며,
  - (t)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건강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 (u) 개개인이 속한 사회와 주변인들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 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촉진 및 준수에 매진하려는 책임 하에 있음을 실현하며,
  - (v)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들의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 (v) 가족은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는 집단이라는 것과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에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구성원들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다음의 조항들을 동의한다:

### 제1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촉진, 보호,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

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제2조 개념정의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

“의사소통”은 구어와 수화, 텍스트의 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필기, 오디오,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 쉬운 언어, 낭독인, 확장적이고 대안적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역시 이에 포함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은 장애를 근거로 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및 기타 영역에서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 또는 결과를 뜻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의 거부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차별을 포함한다.

“언어”는 구어와 수화 그리고 기타 유형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를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은 상황별로 필요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불균형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편적 디자인”과 “통합적인 디자인”은 조정 혹은 특수제작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보편적 디자인”과 “통합적인 디자인”은 필요한 곳에서 특정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가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3조 일반원칙

본 협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 (b) 차별 금지;
-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d)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로서로서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장애의 수용;
- (e) 기회의 균등;
- (f) 접근성;
-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 (h) 장애아동의 점진적인 역량 존중 및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 제4조 일반의무

1. 당사국들은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모든 장애인의 인권 전반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 (a) 본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이행을 위한 모든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들을 채택한다;
  -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존 법, 규정, 관습 및 관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c)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고려한다;
  - (d) 본 협약과 일치되지 않는 행위 또는 관행은 제한하고 공공 당국 및 기관들이 본 협약과 일치하여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 (e) 모든 개인, 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f) 다음 사항의 연구, 개발, 유용성, 이용을 행하거나 촉진한다:
    - (i) 보편적으로 디자인된 재화, 서비스, 장비와 시설. 이러한 것들은 기준 및 지침 개발에 있어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이러한 욕구에 맞는 구조변경과 가격의 최소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 (ii) 적정 가격의 기술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장애인에게 맞는 새로운 기술. 이러한 신기술에는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보조 기술 등이 포함된다;
  - (g) 기타 여러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포함한 이동보조수단, 보장구 및 보조 기술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 (h) 본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에 대해 장애분야의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한 훈련을 도모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에 의해 보장되는 보다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용가능한 본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들에 대한 편견 없이 각 당사국들은 필요한 곳이라면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성취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시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에 관한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당사국들은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논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4. 장애인 권리실현에 더 큰 도움이 되고, 각 국가의 법 또는 해당 국가에 강제력이 있는 국제법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본 조약의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본 협약에서 제약 또는 침해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협소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이유로 법, 협약, 규칙 또는 관례를 따르는 본 협약에 대해 당사국 내에 존재 또는 인지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 중 어느 하나라도 제약을 받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5. 본 협약의 조항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어야 한다.

##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1. 당사국들은 모든 사람은 법 앞과 법 하에서 평등하며 법의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장애를 기반으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



한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3.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합리적인 편의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시키거나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본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제6조 여성장애인

1. 당사국들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역량강화와 성별에 민감한 조치들은 필수적이다.
2. 당사국들은 본 협약에서 제시된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와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실행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발전, 향상, 역량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들은 다른 아동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들에 있어 아동의 최대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당사국들은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기준으로 장애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장애와 연령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제8조 인식 개선

1.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a)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

- 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시킨다;
-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한다;
  - (c)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이 기여한 바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2.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치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a) 다음을 위해 고안된 효과적인 인식 캠페인을 추진, 지속한다:
    - (i)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지각 양성;
    - (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보다 큰 사회적 인식의 촉진 ;
    - (iii) 직장과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정 촉진;
  - (b) 모든 영아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 (c)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미디어 기관들이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권장;
  -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 증진.

## 제9조 접근성

1.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의 확인 및 제거를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되어야 한다:
  - (a) 학교, 주택, 의료시설과 일터를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
  - (b)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
2. 당사국들은 또한 다음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일반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및 지침의 이행을 개발, 공포 및 감시;
  - (b) 일반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

- 구들이 장애인을 위한 모든 형태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보장;
- (c) 장애인들이 직면한 접근성 이슈들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에게 훈련 제공;
  - (d)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지판 설치;
  - (e)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인,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현장 지원과 매개체의 형식 제공;
  - (f)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
  - (g) 장애인에게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로의 접근성을 촉진;
  - (h) 초기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하는 것을 촉진하여 이러한 기술 및 체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 제10조 생명권

당사국들은 모든 인류가 천부적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반의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위급상황

당사국들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 의무에 따라 무력 분쟁, 인도적인 위급상황 및 자연재해 발생과 같은 상황들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

1.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법적능력<sup>2)</sup>을 누려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4. 당사국들은 법적능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입법 또는 기타 조치들이 국제인권법에 따라 오용을 막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보호조치는 법적능력 행사와 관련이 있는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분쟁과 부당한 위압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여 균형을 맞추고, 가능한 최단기간에 적용을 하며, 자격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법률기구에 의한 정기심의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호조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5. 본 조항 규정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재산 소유 또는 상속에 있어 평등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재정적 사항들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기타 재무신용에 있어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장애인의 재산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13조 사법접근권

1. 당사국들은 조사 및 기타 사전준비 과정과 함께 모든 법적 절차에 있어 증인을 포함하여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2. 장애인들의 효과적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돕기 위해 당사국들은 경찰과 구치소 직원을 포함하여 법의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도모해야 한다.

###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1.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2) 아랍, 중국, 러시아에서는 “법적능력”이라는 용어는 “법적능력의 행사”보다 “권리에 대한 법적 능력”을 의미함.

- (a)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를 누린다;
  - (b)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 또는 임의적으로 침해되지 않고, 자유 침해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으며, 장애여부로 인한 자유 침해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장애인들은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사국들은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본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여 장애인들이 처우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

-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및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의료 또는 과학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2. 당사국은 제반의 효과적인 법률, 행정, 사법 또는 기타 수단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 1. 당사국들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에 기반을 둔 형태를 포함하여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당사국들은 또한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 및 보호자들을 위한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보조 및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보조 및 지원에는 착취, 폭력과 학대를 피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통한 방식이 포함된다. 당사국들은 연령, 성별,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장애

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독립기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4. 당사국들은 보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인들의 신체, 인지 및 심리적 회복, 재활과 사회재통합을 증진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욕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5. 당사국들은 여성과 아동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적재적소에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관련 사례를 확인, 조사하고 때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신 본연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제18조 이주의 자유

당사국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 자유권, 거주지와 국적 선택에 대한 자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 (a)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또는 임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b) 장애를 근거로 하여 국적에 관련된 문서 또는 기타 신분증명 문서를 취득,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 혹은 이주의 자유권 행사를 촉진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는 이민 절차와 같은 관련된 절차를 이용하는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c) 자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d)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자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장애아동들은 태어난 후 바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며 출생 후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그리고 최대한 본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권리를 장애인들의 완전히 누리고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 (a)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거주형태에서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 (b) 장애인의 생활과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지원을 포함하여 각종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c)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및 시설은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기준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 제20조 개인의 이동

당사국들은 최대한 독립적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a)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개인의 이동을 촉진;
- (b) 장애인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우수한 이동보조기구, 장치, 보조 기술, 여러 형태의 현장지원 및 매개수단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장려;
- (c) 장애인의 이동 기술에 관한 훈련과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 담당자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
- (d) 이동보조기구, 보장구 및 보조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이동성을 참작할 수 있도록 권장.

## 제21조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당사국들은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과 그 밖의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형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보를 구하고, 얻고 알리는 자유가 포함하여 장애인이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a)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알맞게 접근 가능한 형식 및 기술로 적합한 시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장애인에게 제공;
- (b) 장애인들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형식을 사용하도록 수용하고 촉진;
- (c) 장애인들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경로를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들을 촉구;
-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언론매체를 권장;
- (e)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도모.

## 제22조 사생활 존중

- 1. 장애인 어느 누구도 주거지역이나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개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왕래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해 임의적 혹은 비합법적으로 침해 받거나, 그들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비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 2. 당사국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사생활, 건강 및 재할 정보를 보장해야 한다.

##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1. 당사국들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결혼, 가족, 부모성 및 관계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장애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 적령기의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 (b) 장애인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수와 나이 터울을 선택하고, 연령에 적합한 정보와 출산 및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인정되는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을 장애인이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과 임신 능력의 보유에 대한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c)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신들의 임신 능력을 유지해야만 한다.
2. 당사국들은 아동의 후견인, 피후견인, 피신탁인, 입양 또는 국내법에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해야 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양육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장애아동들이 가정생활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은닉, 유기, 방임, 격리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당사국들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초기 및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4. 당사국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합법적인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부모와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지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와 격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아동은 아동의 장애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5. 당사국들은 직계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을 경우 확대가족 내에서, 확대가족도 돌보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가정의 형태를 갖추어 장애아동에게 대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 제24조 교육

1. 당사국들은 교육에 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평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차별 없이 이러한 교육권을 현실화하려는 관점에서 당사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교육체계와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 (a) 인간의 잠재력, 존엄에 대한 감수성, 자아 존중감의 개발 극대화와 인권,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인류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b) 장애인의 정신 및 신체적 능력뿐만 아닌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개발 극대화;
  - (c) 자유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 유도.
2.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당사국들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a)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공교육 시스템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장애 아동이 장애 때문에 무상 의무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b)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통합, 양질, 무상 초등 및 중등 교육에 접근가능하다;
  - (c) 개인의 요구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
  - (d) 일반 교육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 (d)bis 완전한 통합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학업 및 사회적인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인 개인지원 조치들이 제공된다.
3.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교육에 있어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 및 사회적 개발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점자, 대체 문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형식의 의사소통,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의 학습을 증진하고 동료집단 지원 및 멘토링의 촉진;
  - (b) 수화 학습 및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언어적 정체성 증진 도모;
  - (c) 시각, 청각, 시청각장애인의—특히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동—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의 방식 및 수단, 그리고 학업 및 사회적인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전달되도록 보장.
4.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화와 점자 언어에 자격이 있는 교사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인식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의 의사소통, 교육기술 및 자료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제3차 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 제25조 건강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이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각국은 의료관련 재할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로의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히 각 당사국들은 다음을 이행한다:

- (a) 성적·생식적 의료분야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범위, 질과 수준의 무료 또는 적절한 가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b) 조기 발견과 적절한 예방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특히 장애로 인한-의료 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한 이차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c)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d)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기초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료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비장애인들과 같은 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 및 민간부문 건강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욕구에 관한 인식 증진을 통해 제공하도록 한다;
- (e)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 (f)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 또는 식음료 제공의 차별적인 거부를 금지한다.

## 제26조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할

1.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자립을 달성 및 유지하고,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가지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동료집단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 당사국들은

특히 의료,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적인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구성, 강화, 확장해야 한다:

- (a)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인의 욕구와 장점에 대한 여러 전문분야별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b)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있어 참여와 결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서비스에 있어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훈련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 2bis 당사국들은 재활과 관련이 있다면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보장구 및 기술에 대한 유용성, 지식, 그리고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 제27조 근로 및 고용

당사국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이것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자유스럽게 선택하거나 인정된 직업과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들은 고용과정 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다음을 위해 적절한 단계를 거쳐 노동권을 보호, 촉진해야 한다:

- (a)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 연장, 직업 개발,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용관련 제반 사안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 (b)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일에 대한 기회 균등 및 평등적 보상, 희롱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 환경에 대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함;
- (c)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장애인의 노동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d) 일반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배치서비스와 직업 및 지속 훈련

- 에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 (e) 구직, 취업 및 유지, 그리고 직장복귀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의 기회와 직업개발을 증진함;
  - (f) 자가 고용, 기업경영, 협력개발 및 자영업의 기회를 촉진함;
  - (g)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함;
  - (h) 차별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프로그램, 장려금 그리고 기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대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함;
  - (i)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함;
  - (j) 공개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이 직장경력을 획득하도록 촉진함;
  - (k)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 재할, 직업유지 및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증진함.

## 제28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들은 충분한 정도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들의 가족이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환경조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를 인정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보호수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을 증진하도록 한다.
2. 당사국들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이러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보호수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권리의 구현을 증진하도록 한다. 아래의 사항을 시행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a) 정수(淨水)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 장치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b)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소녀, 노인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c) 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장애관련 지출이 이루어지는 정부의 지원(충분한 훈련, 상담, 경제적 지원 및 단기보호를 포함)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d)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e) 장애인들에게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정치적인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 (a)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리인을 통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다음의 사항을 통해 보장한다:
  - (i)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사용 및 이해가 쉽도록 보장한다;
  - (ii) 필요하다면 보조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통해 아무런 위협 없이 장애인들이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 선거를 대표할 권리, 효과적으로 사무실 근무를 하고 모든 단위의 정부기관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 (iii) 당선자로서 장애인의 의지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의해 투표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한다.
- (b)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고 차별 없이 장애인이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들의 공적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
  - (i)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연관된 비정부 기구 및 비정부 협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행정에 참여한다;
  - (ii) 국제, 국내, 지역적으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를 구성하고 참여한다.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1. 당사국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장애인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도록 한다:

-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문화적 자료를 향유할 권리;
  -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TV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기타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성과, 국가의 중요한 기념관 및 문화적 명소 등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향유할 권리.
2. 당사국들은 자신을 위해서 뿐만이 아닌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당사국들은 국제법에 따라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장애인들의 문화적 자료 접근에 불합리한 혹은 차별적인 장벽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수화 및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특정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지원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5.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주류 스포츠 활동의 전 영역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증진한다;
    - (b) 장애인이 장애 특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적절한 지침, 훈련 및 자원의 공급을 보장한다;
    - (c)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여행 장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d)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이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레크리에이션, 관광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 조직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제31조 통계와 자료수집

1. 각국은 본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 및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과 유지의 과정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장애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제정된 보호수단을 준수한다;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 그리고 통계상의 윤리적 원칙을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규범을 준수한다.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집된 정보는 본 협약에 속한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의 평가를 돕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구성요소별로 수집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제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각 당사국간 그리고 적절하게 관련된 국제 및 지역 기관과 특히 장애인 기관인 시민사회 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은 그중에서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 (a)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 선진 사례의 교환과 공유를 포함한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 (c)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지식에 대한 연구와 접근성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
  - (d) 접근 및 보조가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공유와 이에 대한 접근성 지원의 촉진 그리고 기술의 전달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다면 기술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2. 본 조항의 규정은 각 당사국들이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33조 국내적 시행 및 모니터링

1. 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위해 각국의 조직체계에 따라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관련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협력기구를 설치 혹은 지명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 자국의 법적·행정적 체계에 부합하여, 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이행을 촉진·보호·감시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기구를 포함하여 당사국 내에 조직(framework)을 유지, 강화, 지명 혹은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때, 당사국들은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위한 국내 기관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 및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 완전히 포함되고 참여해야 한다.

###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아래 항부터 제시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본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60개의 비준 또는 승인 이후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최대 18명으로 6명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다 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본 협약에서 다루는 분야에 대한 경험 있어야 한다.
4. 동등한 지역적 분배, 다양한 형태의 시민 및 주요 법적 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 회의에서 각국의 후보자 중 비밀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의에서, 정족수는 당사국의 3분의 2 참석이며,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다수표를 획득한 사람이 위원으로 선출된다.
6. 1차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각 선거일 최소 4개월 전에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에게 2개월 내에 후보

자 제출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 이후 사무총장은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후보자 명단을 마련하고 본 협약의 당사국들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주기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1회 재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1차 선거에서 당선된 6명은 2년으로 그 임기가 끝나며, 1차 선거 직후 이 6명의 이름이 본 조항 5항에서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천으로 선택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투표로 이루어진다.
9. 만일 위원회 위원의 사망 또는 사임, 또는 기타의 이유로 그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위원을 후보지명한 당사국은 본 조항의 관련 규정에서 나타나있는 조건에 부합하고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가를 남은 임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명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위원회 나름의 절차 규정을 확립해야 한다.
11. 유엔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하고, 1차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2. 총회의 승인과 함께 본 협약 하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결정대로 기간과 조건에 대한 유엔 자원에서 위원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참작하여 직책수당을 받아야 한다.
13. 위원회 위원은 유엔 특권 및 면제 협약의 관련부문에 명시된 유엔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시설, 특권, 면책에 대한 권리가 있다.

### 제35조 정부보고서

1. 각 관련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위원회에 본 협약 하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과정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그 후, 당사국은 최소 4년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에 적합한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4. 위원회에 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 보고서에 이전에 제시된 내용은 반복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 시 당사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준비하고 본 협약 제4조 3항의 규정

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어려움을 명시해야 한다.

### 제36조 보고서 심사

1. 각 보고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서에 대한 제안 및 일반 권고를 하고 관련 당사국에 그러한 권고를 전달해야 하는 위원회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2. 만일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기한이 상당히 늦어질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자국에서의 본 협약 이행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지할 수 있다. 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사국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통해 응할 경우 본 조항의 1항 규정이 적용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4. 당사국들은 국민들에게 정부 보고서를 광범위하게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보고서의 제안 및 일반 권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고서에 포함된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원에 대한 요청이나 지적을 언급하기 위하여-그리고 만일 이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도 함께-유엔의 전문기구, 기금 또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유사 기구에 정부 보고서를 양도해야 한다.

### 제37조 각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해야 하고 위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각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본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본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의 국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1. 전문기구 및 기타 유엔기관의 위임 범주 내에 포함이 되면 본 협약의 규정 이행심사에서 이들이 대표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유사기구의 위임 범주 내에 포함되는 분야에서 협약 이행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구와 기타 유사기구를 초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유엔 기구 활동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영역의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들을 초청할 수 있다.
2. 위임이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적절하다면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들과 관련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문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해야 한다.

###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해 경제사회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들에게 받은 보고서와 정보의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제안과 일반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권고는 만일 당사국이 그 의견을 제출했다면 그러한 당사국의 의견과 함께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40조 국가간 회의

1. 당사국들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간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
2. 본 협약이 발효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차후의 회의는 2년 주기 또는 국가간 회의의 결정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하도록 한다.

### 제41조 기탁

유엔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기탁인이어야 한다.

### 제42조 서명

모든 국가들은 본 협약에 서명할 수 있다

### 제43조 동의준수

본 협약은 가맹국의 비준 및 가맹지역통합기구의 공식 승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도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 제44조 지역 통합 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회원국들이 본 협약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본 협약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의 범주 내에서 공식 승인 또는 비준서를 선언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적인 개정을 알려야 한다.
2. 본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적용된다.
3. 제45조 1항, 제47조 2, 3항의 목적에 따라 통합기구의 채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안들에 대해 본 협약의 당사국인 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국가간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국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역으로 지역통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45조 발효

1. 본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13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
2. 이러한 20번째 비준서 기탁 이후 협약의 비준, 공식 승인 또는 가입을 한 각 당사국 혹은 지역 통합 기구에 있어 협약은 해당 비준서의 기탁 후 13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

### 제46조 유보

1. 본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 제47조 개정

1. 어느 당사국이나 본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한 국가간 논의 및 결정을 위해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길 원하는지 공지를 요청하면서 당사국들에게 개정안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동의할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 3분의 2 중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 수정안은 사무총장이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하며 그 후 수용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1호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일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기탁된 채택서 13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되어야 한다. 그 후, 당사국들은 채택서 기탁 후 13일이 경과한 날에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 승인을 한 국가만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3. 당사국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면, 제34, 38, 39, 40조에만 해당되는 1항에 따라 채택 및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채택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의 당사국 수 3분의 2를 충족하는 13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국에서 발효되어야 한다.

## 제48조 협약의 폐기

당사국들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년 후에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 제49조 접근가능한 형식

본 협약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50조 정본

본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동일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식 위임을 받아 아래에 기명한 전권대사의 상기의 입회로 본 협약에 서명을 하였다.

#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초안」

(협약과 동시에 채택됨)

본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다음에 동의한다:

## 제1조

1.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이하 당사국”) 해당지역에서 협약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 혹은 이들의 대리인으로부터의 청원 접수 및 심사에 대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2. 만일 본 의정서가 아닌 협약의 당사국에 관한 것이라면 위원회는 청원을 받을 수 없다.

## 제2조

위원회는 아래의 경우에 있어 승인될 수 없는 청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 (a) 청원이 익명인 경우;
- (b) 청원 제출권이 남용되거나 청원이 본 협약 규정에 상응하지 않을 경우;
- (c) 동일한 사안이 위원회에 의해 이미 조사되었거나, 국제 조사 또는 조정의 다른 절차에서 조사되었거나 조사 진행 중인 경우;
- (d)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인 구제가 다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구제 적용이 불합리하게 장기화되거나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다;
- (e) 명백히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불충분하게 입증되는 경우;
- (f) 또는 이러한 사실들이 발효 당일까지 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당사국에 있어 청원내용이 되는 사실들이 본 협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 제3조

본 의정서 제2조 규정에 대해 위원회는 당사국 앞으로 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을 비밀리에 제기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청원을 받은 당사국은 조치가 취해진 사안이나 규제에 대해 명백히 밝히는 서면 해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

1. 청원을 받은 후와 실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어느 때라도 위원회는 긴급심사를 위해 관련 당사국에게 위반혐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본 조항 1항의 판결결정권을 행사할 경우, 이것은 승인 결정 또는 청원실태 포함하지 않는다.

### 제5조

위원회는 본 의정서 하에서 청원을 조사할 경우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청원조사 이후 위원회는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가 있을 경우 관련 당사국과 청원인에게 제출한다.

### 제6조

1. 만일 위원회가 협약에 제시된 권리가 국가에 의해 심각하게 혹은 체계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정보 조사에 협조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정보에 대한 소견을 제출하기 위해 당사국을 초청해야 한다.
2.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소견을 고려하면서 위원회는 조사를 하고 위원회에 긴급보고를 하기 위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보증된 곳에서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조사는 해당지역 방문을 포함한다.
3. 조사 결과 심사 후에 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의견 및 권고와 함께 관련 당사국에 전달해야 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에 의해 전달된 결과와 의견 및 권고를 받은 6개월 이내에 국가 소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그러한 조사는 비밀리에 행해져야 하며 모든 절차에 국가의 협력이 요구된다.

### 제7조

1. 위원회는 협약 제35조 하의 보고서에 본 의정서 제6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응답으로 취해진 조치의 세부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을 초청할 수 있다.
2. 만일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제6조 4항에 언급된 6개월 기간 종료 후 관련 당사국을 그러한 조사의 응답으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 알리기 위해 초청할 수 있다.



### 제8조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서명 또는 비준서, 혹은 가입시 제6조와 제7조에 제시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 제9조

UN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기탁인이어야 한다.

### 제10조

본 의정서는 [xxxx]일자로 뉴욕 유엔본부에 있는 협약의 지역통합기구와 가맹국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 제11조

본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을 한 본 의정서의 가맹국에 의한 비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제12조

1. “지역통합기구”란 회원국들이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협약 및 본 의정서에 준거하는 사안들에 대한 권한의 범주 내에서 공식 승인 또는 비준서를 선언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권한 범주 내에서 기탁인에게 실질적인 개정을 알려야 한다.
2. 본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내에서 적용된다.
3. 제13조 1항, 제15조 2항의 목적에 따라 통합기구의 채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안들에 대해 본 의정서의 당사국인 그 회원국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국가간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국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역통합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역으로 지역통합기구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3조

1. 협약의 발효 대상으로 본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1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비준서 기탁 이후 의정서의 비준, 공식 승인 또는 가입을 한 각 당사국 혹은 지역 통합 기구에 있어 의정서는 해당 비준서의 기탁 후 13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제14조

1. 본 의정서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 제15조

1. 어느 당사국이나 본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대한 국가간 논의 및 결정을 위해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길 원하는지 공지를 요청하면서 당사국들에게 개정안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동의할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 3분의 2 중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 수정안은 사무총장이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하며 그 후 수용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1호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일에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달하는 기탁된 채택서 13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 후, 당사국들은 채택서 기탁 후 13일이 경과한 날에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 승인을 한 국가만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 제16조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서 서면 통고를 통해 본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의 공지일의 일년 후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 제17조

본 의정서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18조

본 의정서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동일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각국 정부에 의해 정식 위임을 받아 아래에 기명한 전권대사의 상기의 입회로 본 의정서에 서명을 하였다.